아르코혁신TF
혁신의제
추진경과 보고회

2018년 12월 21일(금) 14:00~18:00

예술가의집 다목적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C O N T E N T S

05 **인사말**

박종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09 **아르코혁신의제 추진경과**

아르코 혁신의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경학(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직무대행)

주요의제 발제

주요혁신의제,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25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체계 재설정
정영수(프라임전략연구원 원장)

53 2. 사후평가를 통한 지원체계 개선
이진아(숙명여대 한국어문학부 교수)

69 3. 지역문화예술지원 거버넌스
염신규(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

전문가 토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87 김상철(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

90 김미도(서울과학기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93 황해순(전 부산문화재단 예술진흥본부장)

95 박신의(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

99 김정수(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아르코혁신TF 혁신의제 추진경과 보고회

일시 : 2018년 12월 21일(금) 14:00~18:00
장소 : 예술가의집 다목적홀

프로그램

13:30	접수	
		진행 : 김기봉(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14:00	개회 및 안내	
14:05	인사말 박종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14:10	**아르코혁신의제 추진경과** 아르코 혁신의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경학(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직무대행)	
14:40	**주요의제 발제** 주요혁신의제,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체계 재설정 2. 사후평가를 통한 지원체계 개선 3. 지역문화예술지원 거버넌스	 정영수(프라임전략연구원 원장) 이진아(숙명여대 한국어문학부 교수) 염신규(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
15:40	휴식	
16:00	**전문가 토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김상철(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 김미도(서울과학기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황해순(전 부산문화재단 예술진흥본부장) 박신의(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 김정수(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진행 : 강윤주(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16:50	**자유발언 및 토론**	
17:50	마무리 발언 및 발표(새로운 예술위원회) 박종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17:55	폐회	

인사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박종관입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켠에는 만만치 않은 무게감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의할 내용들의 면면이 결코 녹록치 않기 때문입니다.

예술은 우리 스스로를 나타내고, 증명하는 숭고한 표현의 방식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창조적 가치입니다. 우리 예술위원회는 그 가치를 구현하고 드높이기 위해 어떤 활동을, 어떤 주체를, 어떻게 지원해야할지 결정해야 하는데, 그 일은 막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술위원회는 지난 정부에서 일부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정책방향에 휘둘린 하청기관이 되어 해서는 안 될 큰 과오를 범했고, 그동안 해왔던 많은 것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문화예술계와의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우리 기관은 그 모든 것을 통렬히 반성하고, 새로운 다짐으로 예술현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아르코혁신TF에서 올해 초부터 6월까지 깊은 고민을 통해 예술위원회의 조직과 사업 혁신을 위한 스물세 가지 의제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이를 받아 실현하기 위해 애쓰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그 과정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다시 한 번 고언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 시기 우리의 과오가 일순간 씻겨나갈 수는 없겠지만, 끊임없이 노력해 여러분의 신뢰를 되찾고, 함께 좋은 날을 꿈꿀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박종관



아르코 혁신의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경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직무대행)

아르코혁신TF 혁신의제 추진경과 보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아르코혁신TF 혁신의제
추진경과 보고

조직 분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0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국가예술위원회 전환 조직 분야

● ● ● 주요 내용

문체부의 예술정책 기능을 현장예술인이 참여·결정하는 <국가예술위원회>로 이관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단위 예술행정과 지원체계의 자율성·독립성을 법제도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주요 예술지원기관 → 국가예술위원회)

예술현장 전문가가 예술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결정하는 민주적 합의 구조로 설계

현행 15명인 위원 규모를 지역/장르/분야 위원으로 대폭 확대, 이 중에서 의결권한을 지닌 대위원과 위원장 (기관장) 선출

● ● ● 진행단계 - 추진중

그동안 이렇게 진행하였습니다

■ 블랙리스트진상및제도개선위원회 개선안 검토 후 세부사항연구

- 국가예술위원회 설립 타당성, 가능성, 개정 필요 법제도 등 전환 관련 연구 진행('18.12월 완료)

*혁신의제 추진경과 보고회('18.12.21) 시 발표 및 의견 수렴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예술위원회 전환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19년)

■ 소위원회 운영 활성화 ('19.3월)

*기존 소위(5개) + 장르별 소위 + 추가 기능별 소위 신설

02.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공공기관운영법에서 제외 조직 분야

● ● ● 주요 내용

현행 「공운법」상 '기금운영 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등에서 대상 제외 기관으로 지정

- 단기적으로는 법률(공운법) 적용 제외, 장기적으로는 문화기본법상 기구로서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

● ● ● 진행단계 - 추진중

그동안 이렇게 진행하였습니다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적용여부에 따른 변화, 고려사항 등 자체 조사('18.10월)

■ 공운법 제외 검토 연구 진행('18.12월 완료 예정)

*혁신의제 추진경과 보고회('18.12.21) 시 발표 및 의견 수렴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기타 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 유형 변경 협의(기획재정부/~2019.1월)

*문체부 및 기재부와 공운법 제외 협의(2019.1월~/2020년 목표)

03. 위원추천위 구성 권한을 예술위로 이관, 위원장 호선제 실시 조직 분야

● ● ● 주요 내용

위원 구성절차에 대해 참여적 구조 활성화
→ 위원 선임과정이 현장으로부터 추대되는 절차 중심의 구조

위원추천위 구성(권한)을 예술위에 '위임(단기)/이관'(장기)하고 위원추천위는 공모와 심사과정 공개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위원장 호선제 제도화 병행(「문화예술진흥법」 제24조 제2항 개정)

● ● ● 진행단계 - 추진중

그동안 이렇게 진행하였습니다

- 위원추천위 구성을 통한 위원 선임 (문체부)
  - 무용, 문화일반 완료('18.11월) / 음악분야 추가 선임 예정
- 공운법 제외 연구 진행시, 호선제를 포함한 위원회의 자율성, 독립성 제고 방안 포함 연구 ('18.12월 완료)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기타 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 유형 변경 협의(기획재정부/~'19.1월)
  * 유형 변경시, 문예진흥법 개정 추진(위원장 호선제 포함/'19년)
- 위원추천위 구성(권한) 위임 관련 제도 변경 연구 추진('19년 상반기)

04. 소위원회 활성화 조직 분야

● ● ● 주요 내용

소위원회 중심의 운영체계를 활성화하여 지원정책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예술현장이 필요로 하는 정책설계 기반을 조성

- (단기) 현장소통과 예술현장의 의제 공론화를 위한 소위원회 설치 운영
- (장기) 소위원회가 예술인으로 구성된 '예술의회'로서 기능하도록 개선

예술현장의 창구역할을 위한 지역예술인, 여성, 세대 등 다양한 외부위원 참여 의무화

- (중기) 위원회 인원 확대, 소위의 외부위원 비율 과반 이상 확대

● ● ● 진행단계 - 추진중

그동안 이렇게 진행하였습니다

- 소위원회 구성 완료 (5개 소위/'18.6월)
  * 현장소통, 예술정책·지원, 예술확산·지역협력, 재원확충, 미래전략 소위원회
- 제2기 현장소통위 위원 구성을 위해 심의 방법 활용 등 기초 논의 후 (12월중 확정)
  * 제1기 위원 1/3 연임, 장르, 지역, 성별 등 고려
- 성평등소위원회 구성('18.12월 예정)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소위원회 중심의 운영체계 확대('19.3월)
  * 기존 소위(5개) + 장르별 소위 + 추가 기능별 소위 신설
- 현장소통단 및 소위 민간위원 공개모집 추진 및 확정('19.1월~3월)
  * 현장소통단 : 소위의 민주적 구성을 위한 예술계 참여자로 SNS 등을 통해 공개모집 추진 예정(30인 ~ 50인 내외)

05. 예술적 전문성 요구 분야에 개방직 직위 도입 및 운영 — 조직분야

주요내용

주요한 지원사업 중 예술인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개방형 직위로 전환→예술인을 통한 예술행정 가능성 구축

- (단기) 미술관, 극장 등 운영시설에 대해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하고, 위탁업무는 점차적으로 예술인 일자리로 운영
- (장기) 예술행정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예술위 위원 중 일부 상근직 제도(상임위원) 도입

진행단계 - 추진중

그동안 이렇게 진행하였습니다

- 지원사업 중 예술인 전문성 필요 분야 검토 및 조직 개편 후 극장, 미술관 등의 관련 직무에 대한 개방형 직위(직무)공모제 시행 검토
- 시설 역할, 조직운영체계, 현장소통 강화, 전문성 제고 등 논의를 위한 운영자문위원회 발족
  - 아르코·대학로 예술극장 운영자문위원회 ('18.9월~현재, 3차)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아르코·대학로 예술극장 중장기 운영 방향성 모색을 위한 공개 좌담회 및 토론회 추진('18.12월~'19.2월)
  - 아르코·대학로 예술극장 운영방향에 따라 개방형 직위 또는 외부 운영위원회 도입 여부 결정

06. 공모 및 지원사업 과정에서 예술인, 국민의 참여 확대, 예술현장의 대변자로서 예술위 역할 강화 — 조직분야

주요내용

(단기) "예술인 옴부즈만 제도"신설

- 계약, 정산 등 지원컨설팅 강화
- 고충, 애로 상담지원 기능 확대

(장기) 공모/지원사업의 심사와 평가과정 사이에 '집행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 추진과정 모니터링 실시

- 각급 정부기관에서 운영중인 옴부즈만 제도를 차용, '예술인 모니터단' 구성 운영
-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실명제 강화

진행단계 - 추진중

그동안 이렇게 진행하였습니다

- 지원사업 정산모니터링 대행체계 운영('18.8월~연말)
- 현장소통 게시판 신설('18.11월)
- 조직개편시 지원컨설팅 기능 강화 기능 신설 검토 ('18.12월)
- 전체사업 대상 사업실명제 실시 검토 ('19년사업)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현장소통 게시판 운영 활성화('19.1월~3월)
- 사업 모니터링,평가체계 관련 소위 신설 검토 ('18.12월)
- 예술인 옴부즈만(지원컨설팅, 고충처리 등) 제도 운영 검토('19.2월~5월)
- 전체사업 사업실명제 실시(홈페이지 사업안내 게시/'19.3월)

07. 문체부와 예술위 간 수평적 협력관계 제도화(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조직 분야

● ● ● 주요 내용

(단기) 위원장 임기(3년)내 정책목표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문체부 장관과의 자율운영 협약서를 체결 → 팔길이원칙 제도화

(장기) 문체부-예술위 업무협력과정을 제도화 → 비공식적 수직 관계 해체

- 업무협조 및 협의과정 제도화 장관지침 마련(문체부)

정부-지원기관-문화계 <공정성 협약> 체결 (블랙리스트가 작동한 문체부 산하 모든 기관에 적용) → 예술정책의 공정성 보장

<문예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예술위 자율성과 범위 명시

● ● ● 진행단계 - 추진중

그동안 이렇게 진행하였습니다

- 위원장 취임 후 문체부와 자율경영협약 추진
  - 문체부 협의 진행 ('18.12월)
    * 자율경영협약체결 준비 및 업무협의체 구성 협의
- 해외 사례 연구(문체부, 문화관광연구원/'18.12월)
  * 영국문화부와 영국예술위원회 간 운영협약문 사례 연구
- 자율경영협약 체결을 위한 연구 용역 진행('18.12월 완료)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예술위-문체부간 자율운영협약 체결('19.3월)
  * 업무협의체 구성 및 협약안 검토('19.1월~3월초)
- 예술위의 자율성과 업무범위를 명시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검토('19년)
  * 관련 연구 시행(소위원회 활동/'19.2월~8월)

08. 문체부의 단순수탁 및 지정교부 사업 정비,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조직 분야

● ● ● 주요 내용

복권기금사업과 단순 재원경유 사업 정비

- 예술위를 경유하여 유사 공공기관에 그대로 이전되는 재원을 문체부로 이전

문체부와 국고 및 기금사업에 대한 독립적 예산편성 절차 마련

- 일반회계와 문예기금의 역할 분담기준 및 편성절차를 별도로 확립
- 균형발적특별회계를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적립금과 예술위-광역재단간 협력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재편성

(장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마련

- 현행 문화기금 통합 및 예술위 계정 설치
- 복권기금 상 문화예술활성화를 위한 재원 전출 강화

● ● ● 진행단계 - 추진중

그동안 이렇게 진행하였습니다

- 외부 재원 전입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확정 / 국회 의결)
  - 전입총액 : 3,056억원 (전년대비 735억 증액)
    * 국고 500억, 체육기금 1,000억, 관광기금 500억, 복권기금 1,056억
- 기금→국고 이관
  - 예술경영지원센터 46억원, 신년음악회 1.8억원, 국악방송 3억원
- 국고→기금 이관
  - 아르코예술극장 30억원, 예술자료원 30억원
    * 문화기금 통합 및 복권기금 확대를 통한 재원전출 강화는 법개정이 필요하여 정부당국 협의 필요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수탁사업의 국고 이관 검토 및 협의(2019.1월~3월)
  * '20년 기금 예산안 수립시 소위원회, 전체위원회 보고 및 반영
- 독립적 예산편성 절차를 예술위-문체부간 자율경영협약에 명시
- 지속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타기금 전입 지속 추진(2019년)
  * 국회의원 입법 협조

09.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혁신

조직 분야

● ● ● 주요 내용

한지협 재구성을 통한 지역문화예술 지원정책 협의기구로의 법적 위상 확보 →예술정책, 사업에 대한 중앙-지역의 정책 숙의기구화

- 예술위와 예술지원기구(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인복지재단 등), 광역. 기초문화재단, 지방문화원 등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력체계 구축

지역분권차원에서 예술위와 지역간 역할 정립을 통해 예술위 기능 개선

- 지역문화협력관 폐지, 협력채널 지원 전담조직 신설

지역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회혁신운동 지원

- <지역별 문화예술지원실태 보고서> 발행, "예술응호 사회혁신운동" 지원 강화

● ● ● 진행단계 - 추진중

그동안 이렇게 진행하였습니다

- 지역협력 거버넌스 구축 연구 용역 추진 ('18.12월 완료)
  * 혁신의제 추진경과 보고회('18.12.21) 시 발표 및 의견 수렴
- 조직 개편 시 지역협력 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부서 편제 및 지역협력 확대 기능 강화 검토 (지역협력관 제도 폐지 여부 포함)
  * '18.12월 현재 지역협력관 공석 유지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중앙-지역 정책 숙의기구 구성방안 마련('19년 상반기)
- 실질적인 업무 협력이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 검토('19.3월)
- 협력채널 전담조직 신설('19년 조직개편시)

10. 예술위 사무처의 조직혁신안 마련, 예술위와 문체부는 관련 제도 개선 및 재정지원 방안 마련

조직 분야

● ● ● 주요 내용

문체부의 국립예술자료원, 한국공연예술센터의 예술위 통합 후 (사후적인) 제도지원, 재정지원 대책 강구

노사민 조직혁신TF 구성, 2009년 이후 조직진단 진행, 직무 인센티브 구조 재설계

사무처 내 여성노동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정책 필요

조직혁신TF는 유사기관 비교를 통해 업무에 따른 적정 인력 기준 마련, 문체부는 적정인력 확충 방안 강구

● ● ● 진행단계 - 추진중

그동안 이렇게 진행하였습니다

- 기관내 기존 직무분석 검토('18.8월~11월)
- 부서별 간담회 결과 및 연령별, 계층별 직원 소통('18.7월~11월)
- 혁신의제 및 직원 간담회 결과를 반영한 조직개편안 마련('18.12월)
- 노사민TF 구성 협의(노동조합/'18.10월)
- 정부 보수체계 개편 가이드라인(직무역할급 등) 분석 ('18.12월)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예술현장과 맞닿는 전면적 조직 개편 단행('19년)
- 성평등소위 구성 및 운영('18.12월)
-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민 TF 구성 및 협의 진행('19.2월/매월)

아르코혁신TF 혁신의제
추진경과 보고

사업혁신 분야

한국문학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11. 예술위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장 예술인 의견 반영(제도적 장치 마련) 사업혁신 분야

● ● ● 주요 내용

예술위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개방과 공유를 통해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 마련 (예산편성, 사업계획 수립시 정기간담회 등 현장의견 수렴)

- 차년도사업 공모 시기를 당해 9월에 완료, 차년도 1월에 사업 시행
- 신규사업에 대한 현장의견 수렴 완료 (당해연도) 후차년도 1월에 반영

공모/지원사업별 종료시점에 공개 평가회 제도화를 통해 참여예술인의 사업평가 공식화

* 현장의견 수렴 → 차년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 → 반영결과 공유 → 정책평가 및 검토(아르코 컨퍼런스 등) → 현장의견 수렴 → 차년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

● ● ● 진행단계 - 추진중

그동안 이렇게 진행하였습니다

- (현장소통소위) 온라인소통게시판 개통 /'18.11.1
- 공모시기 연례화
  (1차, 2차로 나누어 공모/'18.10월, '18.12월)
- 2019년 신규 반영사업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 후 사업 추진 검토
  * 남북교류사업 관련 공개세미나 개최(주요문학단체 참여 및 의견수렴)
- 공모시기 연례화 : 규정 개정('18.10.5), 공모사업 설명회 개최('18.10.8)
  * 지역순회 설명회 개최(12월 3회/광주,대구,대전)
- '20년 기금 예산안 수립을 위한 예술계 의견 수렴('18.12월 진행중)
  * 예술계 연석회의 진행(장르별, 비상임위원 참여)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향후 예산안 수립시 예술현장 참여 제도화 추진
  ('19.1월~5월)
  * 사업계획(안) 수립단계에서 예술현장이 참여하는 내용을 기관규정화
- 위원장과 예술계의 만남 정례화('19.2월~연중)
- 사업별 공개평가제도 도입 검토('19.3월~7월)

12. 기초예술 중심 지원 창작지원 우선, 창작지원과 향유지원의 선순환 연계(지원사업 체계 재설계)

사업혁신 분야

● ● ● 주요 내용

기본 정책 방향을 대중성 우선의 향유사업이 아닌 창작자 우선 지원으로 설정 (지원 우수 작품이 전국에서 향유 되게끔 연계 강화)

세부화된 지원사업카테고리 통폐합 → 우수작품 창작 지원 최대한 확대

좋은 작품을 창작하는 데 몰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작품 홍보, 마케팅 지원 강화

● ● ● 진행단계 - 추진중

그동안 이렇게 진행하였습니다

■ 의제의 사업화 : '19년도 기금운용계획 확정 (국회 의결)

*창작지원 확대 : 공연예술 중장기창작지원 55억원(다년간지원/신규)

*창작-향유 연계 : 공연예술 온라인확산지원 24.5억원(22억 증액/기존)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지원사업 통폐합 논의 및 '20년 기금 예산안 반영 ('19.1월~4월)

■ 창작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19.2월) 및 '20년 기금 예산안 반영

■ 창작-향유지원의 선순환을 위한 사업(조직) 구조 재편

13. (신진예술인) 도전 기회 제공 확대

사업혁신 분야

● ● ● 주요 내용

신진예술인들이 새로운 창작실험에 대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거듭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최초)지원 제도 제안

- 최초 지원에 대한 사후 평가를 통해 신진활동기간내 최대 3회 정도까지 지원받고 지원금 규모도 점증
- 평론가집단 등 활용, 별도 신청 없이도 우수한 신진 작품에 대해 지원

● ● ● 진행단계 - 추진중

그동안 이렇게 진행하였습니다

■ 신진예술인 활동지원 예산 신규 확보(50억원/국회 의결)

-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10억
- 청년예술가해외진출지원 10억
- 찾아가는청년예술가지원 30억

■ 사이버문학광장 신진 및 청년 작가 지원 강화

* 문장의 소리 신진작가 발굴·소개 코너 마련 (첫 책을 소개합니다)
* 문장 웹진 청년·신진 작가 활동 기반 마련 (청년 작가 간사 제도, 젊은 비평가 특집 기획)
* 신진 작가 오프라인 독자 소통 프로그램 제공 (프린스호텔 소설가의 방 북콘서트 참여 작가 50% 첫 책 발간작가 배정)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행정서식 등 신청요건 간소화 ('19년 청년예술가사업)

* 사업 추진시 현장의견 수렴 후 계획 수립, 시행

■ 사업방식 개선 및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신진예술가 그룹 참여 라운드 테이블 진행('19년 연간)

14. (중견 및 원로 예술인) 사후평가 강화, 다년간 지원

사업혁신 분야

● ● ● 주요 내용

중견 및 원로 예술인들에게는 사후평가를 강화하되 지원금의 폭을 상대적으로 확대

- 지원방식 다양화로 창작 생애주기에 맞도록 변경하고 적절한 규모와 지속성 유지
- 이 과정에서, 사회적 파급이 가능하도록 적극적 향유 과정 서례 및 예술생태계에 맞는 사후평가가 되도록 유도

다년 예술단체 지원사업 신설 (운영비 포함)

- 중장기적 관점의 새롭고 실험적인 창작 활성화로 안정적 관리역량 제고

● ● ● 진행단계 - 추진중

그동안 이렇게 진행하였습니다

- 사후평가를 통한 심의제도 개선 연구 완료 (12월말)
  * 혁신의제 추진경과 보고회(12.21) 시 발표 및 의견 수렴
- 공연예술 중장기창작지원(55억원) 신설(다년간지원/신규)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심의제도 개선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현장 의견 수렴 후 '20년 지원사업 심의시 적용 (단계별확대)
  * 지원평가관련 소위 신설 및 외부위원 참여 확대 검토('19.3월)

15. 다원예술 지원 확대

사업혁신 분야

● ● ● 주요 내용

예술의 다양성을 위한 다원예술 지원체계 복원

현재진행형의 다원예술 개념을 만들어가는 소통 체계 필요

창작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의 다원예술 사업공모 지양, 자유제안 상시화하여 지원하는 사업방식 도입

장르의 융복합실험과 실험적 예술활동 지원 강화

다양성을 확대할 수 있는 사업 발굴, 지원

예술가의 상상력을 공유하고 기획할 수 있는 기획전문 인력 양성 체계 조성

● ● ● 진행단계 - 추진중

그동안 이렇게 진행하였습니다

- 다원예술지원체계 방안 논의 (현장소통소위/'18.8월)
- 기관 중장기 전략(비전) 재설정 진행 중 "다원예술지원 확대"를 비전 재설정(안)에 포함 (다양하고 실험적인 예술활동 지원 확대)
- 창작실험활동지원 예산 반영(4억원/'19년 예산)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다원예술 지원체계 수립('19.2월) 및 '20년 기금 예산안에 신규사업 반영
  * 다원예술 개념과 지원가능 활동범위에 대한 예술계 토론('19.1월~3월)
- 중기적으로 문학, 연극 등과 같은 층위를 가진 독립적 분야로서의 다원 예술 위상 확보 (지원사업 체계 등에 반영)

16. 어린이 청소년 대상 사업 발굴

사업혁신 분야

● ● ● 주요 내용

어린이, 청소년 대상 창작활동 지원 확대

어린이, 청소년 대상 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확대 및 보급 연계

통합문화이용권을 이용하는 어린이,청소년이 기초예술에 접근할 수 있는 문턱을 더 낮추어 다양한 예술 경험

● ● ● 진행단계 - 추진중

그동안 이렇게 진행하였습니다

- 사이버문학광장 회원(글틴 회원 포함)대상 청소년 문학 프로그램 만족도 및 향후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이용자 설문 진행(8월~10월)
- 2015년 중단된 청소년 오프라인 문학 프로그램 '글틴 청소년문학캠프' 정례화 추진('19. 2월)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청소년 문학영재(13세~19세) 참여 오프라인 문학캠프 계획 수립 및 참가자 공개 모집
- 어린이,청소년 창작활동지원 신규사업 개발, '20년 기금 예산안 반영('19.1월~4월)

*예술현장 의견 수렴 후, 추진방식 및 사업내용 확정 후 예산안 제출

17. 다양한 비평 활동 지원 확대

사업혁신 분야

● ● ● 주요 내용

예술담론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비평 활동 지원 확대

*비평고료 지원 확대, 비평사전 연구지원, 전문비평지 발간 인건비 지원 등

전문관객의 작품 비평 사업 지원

● ● ● 진행단계 - 추진중

그동안 이렇게 진행하였습니다.

- (공연예술) 비평연구활성화지원 예산 증액 (2억원 → 3.5억원)
- (문학) 문장 웹진 '비평in문학' 코너를 활용하여 문학 비평의 다양화 모색

*젊은 비평가 특집 : 2017년~2018년 등단한 평론가들을 대상으로 당대 한국문학에 대한 자유 비평

- 문학나눔도서보급사업 '문학나눔 대국민서평단' 운영으로 준전문 비평그룹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진행 준비(2018. 12월)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문학나눔도서보급사업 선정도서에 대한 문학평론가 및 본 사업 심의위원의 전문비평 문장웹진 수록 지원 ('19. 1월)
- 온라인방식의 비평채널 상시 운영(비평in문학)

18. 심의제도 혁신

사업혁신 분야

● ● ● 주요 내용

현장예술인, 평론가, 전문관객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사후평가

- 최종심의과정에 PT제 도입, 지원자 참관을 통해 공정한 심의 진행

당해연도 심의 후, 심의위원에 대한 메타평가를 통해 심의위원풀 정비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제도를 위해 개방형 심의, 공유 PT제도 확대

- 낙선 박람회, 신진예술가 추첨제도, 신청없이 지원 가능한 사후심사제도
- 심의 전문성, 안정성 보장을 위한 심의 전담부서 설치 및 예술인 당사자를 개방직으로 보직
- 선정사업 성과 공개 (사후점검 결과 공유)

● ● ● 진행단계 - 추진중

그동안 이렇게 진행하였습니다

- 사후평가를 통한 심의제도 개선 연구 추진('18년말 완료)
- '19년 공모심의 시 사후평가 일부 운영 및 단계적 확대 (20년 본격운영)
  *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지역대표공연예술제(기존 추진)
- 심의위원 메타평가 툴(tool) 제작 ('18년말 완료)
- 지원사업 전수검토제 실시(일부 사업) : 공연예술특성화극장지원 등
- 심의회의 참관제 시범 도입 ('19년도 문학집필공간지원/12.7)
- 창작산실 지원사업 심의기준 구체화('19년 공모시 적용)
  * 예술정책지원소위 논의 및 심의기준(관객개발노력 등) 개선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공정심의 설문 : '19년도 정시공모 결과발표 후 시행('19.2월)
- 지역문화재단과 예술지원 심의제도 개선 협의체 구성('19.2월)
- 심의위원 후보단 대상 심의안내를 위한 온라인 동영상 제작 및 보급
- 심의제도 혁신을 위한 시범사업 확대 적용방안 검토

19. 예술인 눈높이에 맞는 예술행정

사업혁신 분야

● ● ● 주요 내용

현행 보조금 집행 과정 정비 (법령사항이 아닌 기재부, 문체부 지침에 의한 내용은 간소화)

- (단기) 지원자가 아닌 행정기관에서 수행가능한 과정 선별, 이를 대신 수행

행정용어의 생활용어화 : 서류항목 의도 명확화, 최대한 일상용어로 전환

지원사업 체계의 단순화

- 자기와 관련된 신청가능사업을 알 수 있도록 사업 분류 체계 정리

행정서류 및 절차의 간소화 등

● ● ● 진행단계 - 추진중

그동안 이렇게 진행하였습니다

- 2018년 하반기 현장의견 수렴 후 반영
- e-나라도움 시스템 내 선정단체 정보 입력 예술위가 대행('19년초)
  * NCAS내 지원심의 결과→e-나라도움 자동 전송 기능 개발('18년말)
- 행정서류 간소화
  - 창작실험활동지원, 공연예술창작산실(기존),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신규)
  *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19년 별도 공모시 적용 예정(2019. 2월)
- 지원신청공고문 개선 : 공연예술창작산실 (공고문에 사업취지 상세 설명)
- '18년 문예지연구용역을 통해 공모사업 지원신청·교부신청·실적보고 등 행정서류에 포함된 중복된 내용 간소화 추진 검토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지원사업체계도 구성 및 공개(예술가 생애주기, 활동주기, 장르 등)
- 지원사업 신청서 간소화('19년 상반기 검토 후 '20년 공모사업 반영)
- 지원사업 통폐합 논의 및 '20년 기금 예산안 반영(2019.1월~4월)
  * 예술정책지원소위 활동을 통해 예술계 의견 수렴, 반영

20. 장르별, 분야별 최저임금 및 공정단가 기준 마련, 보급

사업혁신 분야

● ● ● 주요 내용

문화예술 연계 공공계약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주요한 용역단가 기준 마련

장르/분야별 최저임금 연구, 표준계약서 의무화, 아티스트 fee, 계약권리

교부/정산 시 불공정, 불법행위 등에 대한 수혜단체의 관리 책임 강화

작품활동 예산 지출 단가 조사

작품 제작 전 폭력예방을 위한 규칙 및 가해자 제재사항 마련 등

● ● ● 진행단계 - 추진중

그동안 이렇게 진행하였습니다

- 예술창작 공정보상체계 제도개선 간담회('18.8.13. 현장소통소위)
- 문예기금 공연예술사업 5개년 사례비 단가조사 연구 진행('18.10월~)
-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공개토론회 ('18.11.15)
- 미술전시 창작대가기준(아티스트fee)안 마련('18.11월)
-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개정(제9조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 성폭력 특별법에 의해 선고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개인,단체)로 보조사업 수행이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현행 문예지 원고료 단가 통계 산출 및 관련 통계조사 결과를 공개('18.12월)하고, 연례 보고(공개) 방안 검토
- 공연예술사업 사례비 단가조사 연구 완료('19.3월)

21. 공공부문의 예술인 일자리 발굴, 매개

사업혁신 분야

● ● ● 주요 내용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행정혁신 사업 등 창작자들의 예술역량에 기반한 개입이 필요한 영역에 효과적으로 예술인 일자리 사업을 구상하여 적용

인력육성사업이 장르 특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함

- 예술위원회 (예술인복지재단과 협력)에 예술인 일자리 지원 부서 신설

● ● ● 진행단계 - 추진중

그동안 이렇게 진행하였습니다

- 문화예술계 민간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완료('18.8월~11월)
  * 타기관 일자리 개발정책 사례조사, 문화예술계 일자리 개념, 범위 등
- 2018년 도서관상주작가지원사업 작가(문학 큐레이터) 채용
  * 총 35개 중 30개 도서관 채용 확정(86%), 잔여 5개 도서관 채용 완료('18.12월)
- 문화예술계 민간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임직원 대상 공모 ('18.11.7~16)
- 문화예술계 민간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일반국민 대상 공모('18.11.14~23)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기존 예술인력육성사업 외에 예술인 일자리 신규사업 발굴, 예산안 반영('19.2월~4월)
- 예술인력육성사업과 일자리 창출 관련, 유관기관 협력 (예술인복지재단)
- 예술계 일자리 창출아이디어를 관련사업 추진시 반영('19년 연간)
- 조직 개편 시 일자리지원 기능 강화('19년)

22. 다양한 분야 예술인 참여 워크숍, 예술캠프 등 예술인 교류 활성화 사업혁신 분야

● ● ● 주요 내용

동일한 지원사업에 선정된 여러 장르의 예술가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워크숍 및 예술캠프 추진

- 다른 장르와 분야간 토론, 워크숍 지원 확대
- 예술캠프 운영

기타 세대 간 소통, 예술 비평가 간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지역문화재단 협력을 통해 지역간 예술인 교류사업 추진 및 지역축제 교류, 창작공간 교류 등을 위한 지원 정책 마련

● ● ● 진행단계 - 추진중

그동안 이렇게 진행하였습니다

- ARKO NIGHT 추진('18.10.11)
  * PAMS(서울아트마켓) 기간 중 국내 예술인과 해외프로모터간 네트워킹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지원사업 선정단체(개인)간 만남의 장 시범 운영('19.6월)
  * 예술단체간, 예술행정가간, 예술단체-예술행정가간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및 운영 모델 구축
- 지역문화재단 협력을 통한 지역간 예술인교류사업 추진 ('19년 연간)
  * 지역협력 거버넌스 구축 연구 결과에 따라 한지협 재구성을 통한 협의형태 개선 및 시범사업 운영

23. 예술의 가치 확산 사업혁신 분야

● ● ● 주요 내용

(정책컨퍼런스 연례화) 다양한 공공. 민간 지원주체 및 예술계가 참여하여 문화예술진흥 방향을 고민하고 토론하는 열린 장(場) 개최

- 민관합동 컨퍼런스 형태 추진 및 입법부 이해관계 참여 요청

대국민 캠페인 등 사회적 가치 홍보 및 강화

정책분석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운영 체계 마련 → <한국사회 예술의 가치 보고서 (가칭)> 발행

(데이터 생산, 제공) 보유 데이터를 가공, 외부에 제공하여 기초예술관련 연구 확산 계기 마련

● ● ● 진행단계 - 추진중

그동안 이렇게 진행하였습니다

- 기관 통계자료 관리 기본계획 수립('18.9월)
- 혁신의제 추진경과 보고회 개최('18.12.21/예술가의집)
- 조직개편시 사회적 가치 확산 기능 및 정책 수립 기능 강화를 위한 직제 신설 검토('18.12월)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정책컨퍼런스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19.2월)
  * 문체부, 지역문화재단, 예술계 참여
- 예술의 가치 확산을 위한 계획 수립 및 협의체 구성('19.3월)
- 조직개편시 정책 연구기능 독립 및 강화('19년)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내 데이터를 가공(2차 데이터화), 외부에 공개하고, 연구경진대회 추진('19.8월~9월)
  * 그 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통계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연간)
- 공공,민간 예술주체가 참여하는 문화예술 정책컨퍼런스 추진('19.11월)



주요혁신의제,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체계 재설정

정영수
(프라임전략연구원 원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체계 재설정 연구

2018.12

PSRI (주)프라임전략연구원

목 차

I	연구 개요
II	운영체계 재설정 전략방향 구상
III	운영체계 재설정 실행방안 구상

Ⅰ. 연구 개요

1. 연구 시각

1. 연구 시각

- 본 연구의 시각은 2W1H
  - Why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체계 재설정은 왜 필요한가?
  - What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체계 재설정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 How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체계 재설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Why	• 국민주권 및 공정과 정의라는 시대정신 속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의 필요성		
	•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 방향성 담론에 대한 실천방안 구상		
	• 기금배분 기관으로 역할이 아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립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 검토		
What	예술위 독립성	예술위 자율성	예술위 책무성
How	국가예술위원회 설립	공공기관 유형 변경방안	자율경영협약서 제도
	• 운영체계 재설정 환경분석 → 운영체계 재설정 전략방향 구상 → 운영체계 재설정 실행방안 구상 • 운영체계 재설정 실행방안 구상 - 독립성 제고 실행방안 : 국가예술위원회 설립 - 자율성 제고 실행방안 : 공공기관 유형 변경방안 - 책무성 제고 실행방안 : 자율경영협약서 제도		

Ⅱ. 운영체계 재설정 전략방향 구상

1. 전략방향 구상 기반분석
2. 전략방향 구상 내용

1. 전략방향 구상 기반분석

1) SWOT 분석

전략적 방향성 종합 및 키워드 도출

SO	· 문화예술인 참여 및 소통에 기반한 문화예술인 중심 지원체계 구축
	· 국민 및 문화예술인의 문화권 보호를 위한 문화예술 지원 정책수립 및 집행
	·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예술위 혁신 지속
ST	· 예술위 책무성 제고를 통한 문화예술 지원 효과성 제고
	· 문화예술 지원의 환경변화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으로 문화예술 산업 성장 주도
WO	· 문화생태계 구축을 위한 예술위 독립성 확보
	· 전문성에 기반한 한류 및 문화예술 진흥의 핵심역할 수행
	· 중장기적 안목의 정책으로 문화예술의 지속성장 지원
WT	· 소득 및 지역에 따른 문화예술 소외 계층의 문화예술 향유확대를 위한 지원강화
	· 기관운영 자율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창의성 및 다양성 강화
	· 고객(국민 및 문화예술인) 중심 기관 운영은 통한 고객 만족도 제고

독립성	문화예술인 중심 문화예술 지원정책 수립과 문화예술 생태계 정립을 위한 예술위 운영 방향
자율성	문화예술 다양성 및 창의성 발현을 위한 예술위 운영 방향
책무성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예술위 임무 및 역할 고도화 방향

· 문체부와 예술위 R&R(역할과 책임) 정립
– 팔길이 원칙(Arm’ s length principle)에 따른 문체부와 예술위 역할과 책임 명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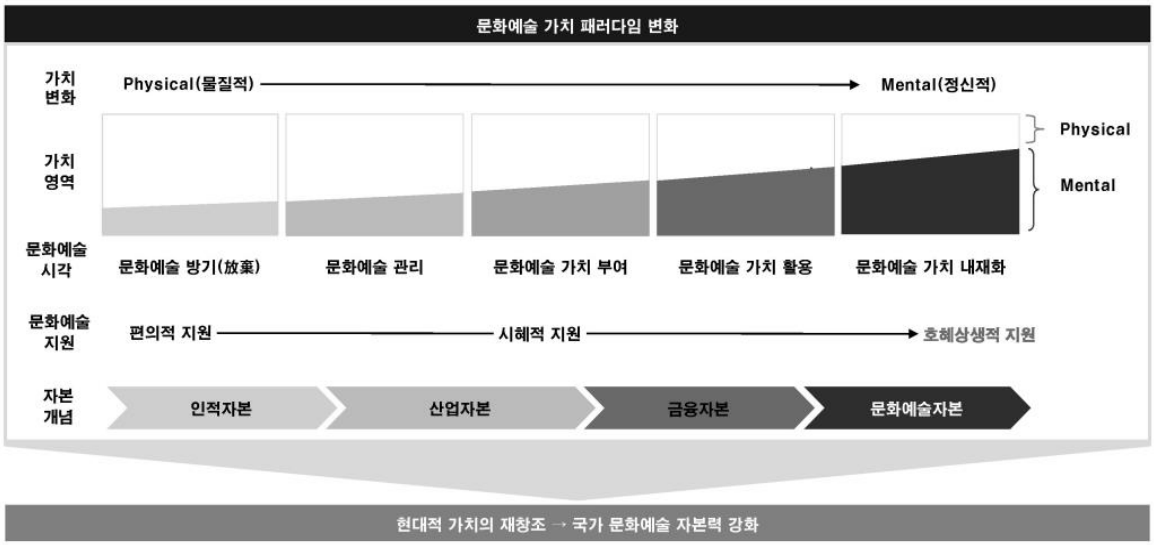
Ⅱ. 운영체계 재설정 전략방향 구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체계 재설정 연구

2. 전략방향 구상 내용

1) 문화예술 지원 패러다임 분석

- 가치 영역의 변화 : 물질 → 정신
- 문화예술 시각 : 방기(放棄) 대상 → 관리 대상 → 가치 활용 대상 → 가치 내재화 대상
- 문화예술 지원 : 편의적 지원 → 시혜적 지원 → 호혜상생적 지원
- 문화예술 시대, 문화예술은 창조자본
- 자본 개념의 변화 : 사람 → 산업 → 금융 → 문화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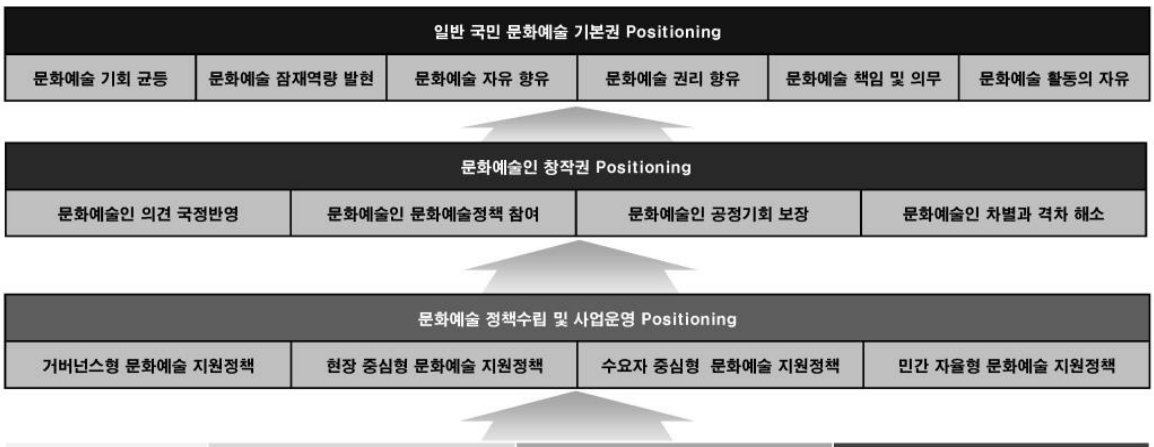


Ⅱ. 운영체계 재설정 전략방향 구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체계 재설정 연구

2. 전략방향 구상 내용

2) 문화예술 지원 방향 Positioning



유형	문화예술 지원 1.0(관리 유형)	문화예술 지원 2.0(참여 유형)	문화예술 지원 3.0(동반 유형)
방향	문화예술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중점	문화예술인과 문체부 및 문화예술 지원 기관 공동 참여	문화예술 정책수립 및 문제해결을 위한 실행력을 문화예술인들에게 일부 위임
문화예술인 역할	문화예술 지원 서비스 수요자 (고객으로 문화예술인)	문화예술 지원 서비스 공급 부분 참여자	문화예술 지원 서비스 공급 참여자 및 파트너로 지원 서비스 주체인 문화예술인
공공(문체부 및 지원기관) 역할	문화예술 지원 서비스 공급자 역할	문화예술 지원 서비스 공급자 역할	문화예술 지원 서비스 촉매자, 촉진자 (퍼실리테이터)
문화예술단체 역할	문화예술 지원서비스 향유 공간	문화예술인 공동체 의식 제고와 대의민주주의	거버넌스 및 문화예술인 주권 실현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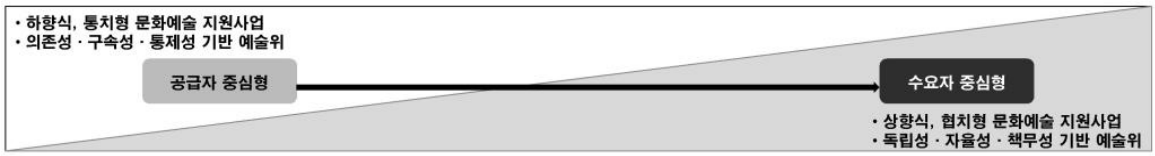
Ⅱ. 운영체계 재설정 전략방향 구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체계 재설정 연구

2. 전략방향 구상 내용

3) 예술위 업(業) 재정의

예술위 목적	예술위 정관	• 훌륭한 예술이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이가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함	• 문화예술 진흥 관련 사업 및 활동 지원
예술위 주요 사업	예술위 정관	• 문화예술의 창작, 매개, 향수와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 •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 개발 및 교육 · 연수 사업이나 활동 • 민족전통문화의 보존 · 계승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및 법 제4조에 의한 지방문화예술위원회와 재단법인과의 협의 · 조정 등에 관한 사항 • 남북 및 국제 문화예술의 교류 사업이나 활동 • 문화예술 기반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 • 문화예술인의 창작환경개선 및 후생복지증진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 • 문화예술 재원의 확충 및 조성을 위한 연구 및 사업이나 활동 • 공공미술(대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미술 작품을 설치 · 전시하는 것을 말한다)진흥을 위한 사업 •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및 시설의 설치 · 운영	
예술위 주요 직무	문화예술진흥법	•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 · 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 ·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위원회가 소유하는 시설의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조사 · 연구 · 교육 · 연수에 관한 사항 • 3명 이상의 위원이 심의 ·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 그 밖에 위원회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Ⅲ. 운영체계 재설정 실행방안 구상

1. 예술위 운영체계 재설정 로드맵
2. 예술위 독립성 제고 실행방안 구상
3. 예술위 자율성 제고 실행방안 구상
4. 예술위 책무성 제고 실행방안 구상

Ⅲ. 운영체계 재설정 실행방안 구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체계 재설정 연구

1. 예술위 운영체계 재설정 로드맵

- 예술위 운영체계 재설정 로드맵은 목표적 로드맵과 전략적 로드맵으로 구분하여 설정함. 목표적 로드맵은 예술위 운영체계 재설정에 따른 효과성 우선순위에 의하여 설정하며, 전략적 로드맵은 예술위 운영체계 재설정 실현 용이성 우선순위에 의하여 설정함
  - 목표적 로드맵 : 1순위 국가예술위원회 설립, 2순위 예술위 기관 유형 변경, 3순위 자율경영협약 체결
  - 전략적 로드맵 : 1순위 자율경영협약 체결, 2순위 예술위 기관 유형 변경, 3순위 국가예술위원회 설립

운영체계 재설정 방안	독립성 : 국가예술위원회 설립	자율성 : 예술위 기관 유형 변경	책무성 : 자율경영협약 체결
	• 예술위 독립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예술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	• 예술위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관유형을 현재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 전환 또는 공운법 제외 방안	• 예술위 책무성 제고를 위한 문체부와 예술위 간 자율경영협약을 체결하는 방안

	1순위	2순위	3순위
목표적 로드맵	국가예술위원회 설립	예술위 기관 유형 변경	자율경영협약 체결
전략적 로드맵	자율경영협약 체결	예술위 기관 유형 변경	국가예술위원회 설립

Ⅲ. 운영체계 재설정 실행방안 구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체계 재설정 연구

2. 예술위 독립성 제고 실행방안 구상

1) 실행방안 기반분석

환경 관점

1 문화예술 외부환경 관점

외부환경 변화

국민 주권 시대 도래	• 비민주적/비인권적 제도 및 관행 척결에 대한 국가적, 국민적 인식 • 국가의 권위주의와 비민주적 통제 관행 청산을 위한 시대정신 내재화
문화 가치 시대 도래	• 문화 가치 시대 도래에 따른 문화예술 중요성 인식 • 창의성과 국가경쟁력 기반으로 문화예술
협치와 협력 시대 도래	• 공급자 중심의 문화예술 정책이 아닌 수요자 중심 문화예술 정책 • 통치와 관리의 문화예술 정책에서 협치와 협력의 문화예술 정책
참여와 공론 시대 도래	• 시혜적 문화예술 지원정책에서 호혜상생적 문화예술 지원정책 • 하향식 문화예술 지원정책에서 상향식 문화예술 지원정책 -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예술 지원정책 PDS(Plan-Do-See) 주체

- 국민 주권 시대 도래에 따른 국가의 권위주의와 비민주적 통제 관행 청산을 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역할 독립성
- 문화 가치 시대 도래에 따른 창의성과 국가경쟁력 기반으로 문화예술 성장을 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역할 독립성
- 협치와 협력 시대 도래에 따른 통치와 관리의 문화예술 정책에서 협치와 협력의 문화예술정책을 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역할 독립성
- 참여와 공론 시대 도래에 따른 하향식 문화예술 지원정책에서 상향식 문화예술 지원정책을 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역할 독립성

Ⅲ. 운영체계 재설정 실행방안 구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체계 재설정 연구

2. 예술위 독립성 제고 실행방안 구상

1) 실행방안 기반분석

환경 관점

2 문화예술 내부환경 관점

내부환경 변화

문화예술 양적 자원 확대	• 국민들의 문화예술 수요가 향유에서 참여로 변화함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 양적 자원 확대
문화예술 본연의 가치 복원	• 유기체적 관점으로 문화예술을 인식하여 문화예술 생태계 복원 • 문화예술의 질적 가치 및 품격 제고
문화예술 글로컬(Glocal)화	• 문화예술을 통한 세계적 전범(典範)의 창출 • 국가의 위상 제고와 국가 상징성 강화
문화예술 사회적 자본화	• 공동의 목표, 공동 이익을 위한 상호 조정과 협력의 촉진 기반으로 문화예술 역할 • 소프트 파워 원천으로 문화예술

- 문화예술 양적 자원 확대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역할 독립성
- 문화예술의 생태계 복원, 질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역할 독립성
- 문화예술을 통한 세계적 전범(典範)의 창출 및 국가위상의 제고를 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역할 독립성
- 문화예술 사회적 자본화를 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역할 독립성

Ⅲ. 운영체계 재설정 실행방안 구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체계 재설정 연구

2. 예술위 독립성 제고 실행방안 구상

2) 실행방안 구상

- 독립성 제고를 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체계 재설정 방안으로 국가예술위원회 설립을 검토함
- 국가예술위원회 설립 유형은 행정기관위원회(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 유형과 중앙행정기관위원회 유형으로 검토할 수 있음

(1) 행정기관위원회 유형

1 행정기관위원회 개요

- 행정기관위원회 개념
  -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임. 행정기관위원회는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구분됨

  - 행정위원회
  ① 행정기관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하거나, 준입법적 ·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② 행정기관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정부조직법 제5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1조)
  ③ 국가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이 있고, 통상 사무국 등 하부조직을 설치할 수 있음
  ④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준입법적 기능 및 이의의 결정 등 재결을 행할 수 있는 준사법적 기능을 가지기도 함

  - 자문위원회
  ①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행정기관에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 · 조정 · 협의하는 등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행정기관
  ②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로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행정기관에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 · 조정 · 협의하는 등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위원회로, 그 의사결정은 일반적으로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집행함
  ③ 대부분 비상설 위원회로 구성되며, 원칙적으로 사무기구를 둘 수 없음
  ④ 업무 내용이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거나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치하며, 법령에서 규정된 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가능
    * 그 결정이 행정기관을 법적으로 기속하는 위원회(예) 최저임금위원회, 중앙징계위원회 등이 이에 해당
    * 그 결정이 행정기관을 법적으로 기속하지 않는 위원회(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등이 이에 해당

- 행정위원회는 행정기관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하거나, 준입법적 ·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 행정위원회는 국가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이 있고, 사무국(처) 등 하부조직을 설치할 수 있는 위원회
- 행정위원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준입법적 기능 및 이의의 결정 등 재결을 행할 수 있는 준사법적 권한 소유
- 자문위원회는 행정기관에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 · 조정 · 협의하는 위원회

2. 예술위 독립성 제고 실행방안 구상

2) 실행방안 구상

(1) 행정기관위원회 유형

2 행정기관위원회 유형분류

구분	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
현황	37개	521개
개념	행정기관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정부조직법 제5조) * 위원회법 5조① * 예 : 개인정보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등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 * 법 5조② * 예: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통일준비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등
권한	• 행정기관 의사를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권한이 있음 (행정, 준입법 및 준사법 기능 보유, 통칙 제21조) • 행정권한을 위원회 명의로 직접 행사	• 행정기관 의사결정을 지원하지만,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권한은 없음 (정부조직법상 부속기관 중 자문기관에 해당) • 행정권한을 행정기관 명의로 행사
설치요건	① 자문위원회 ①요건과 동일 ② 자문위원회 ②요건과 동일 ③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을 것 ④ 업무가 계속성 · 상시성이 있을 것	① 업무내용이 전문가 의견 등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② 업무성질이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세부유형		위원회 결정의 행정기관 기속여부에 따라 크게 의결위원회(기속)와 심의위원회(불기속)로 구분하며, 심의 · 의결위원회도 있음 * 예: 의결위(최저임금위원회 등), 심의회(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 · 의결위(공공기관운영위원회 등)
사무기구	설치 가능	설치 불가. 단, 여러 행정기관의 소관 기능을 조정 · 종합하는 위원회는 설치 가능

자료 :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행정안전부

〈위원회 설치 근거별 현황(2018년 6월 말 기준)〉

구분	계	법률	대통령령
계	558	497	61
행정위원회	37	37	-
자문위원회	521	460	61

자료 : 2018년 행정기관위원회 현황, 행정안전부

〈위원회 소속별 현황(2018년 6월 말 기준)〉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19	56	483	행정위원회 2
			자문위원회19
			합계 21

자료 : 2018년 행정기관위원회 현황, 행정안전부

Ⅲ. 운영체계 재설정 실행방안 구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체계 재설정 연구

2. 예술위 독립성 제고 실행방안 구상

2) 실행방안 구상

(1) 행정기관위원회 유형

2 행정기관위원회 유형분류

구분	행정위원회명	근거법률
대통령(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규제개혁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
국무총리(9)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납북피해자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동의대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주4 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 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2)	10 ·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10 · 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원회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등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

Ⅲ. 운영체계 재설정 실행방안 구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체계 재설정 연구

2. 예술위 독립성 제고 실행방안 구상

2) 실행방안 구상

(1) 행정기관위원회 유형

2 행정기관위원회 유형분류

구분	자문위원회명	근거법률
대통령(17)	3.1운동및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3.1운동및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4차산업혁명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1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기본법 제13조
	국가교육회의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2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7조
	국가우주위원회	우주개발진흥법 제6조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7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기본법 제6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도서관법 제12조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일자리위원회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회기본법 제23조
	자치분권위원회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정책기획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Ⅲ. 운영체계 재설정 실행방안 구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체계 재설정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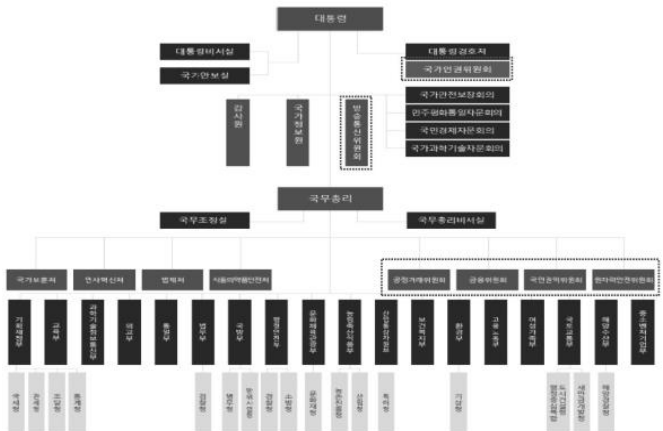
2. 예술위 독립성 제고 실행방안 구상

2) 실행방안 구상

(2) 중앙행정기관위원회 유형

1 중앙행정기관위원회 개요

- 중앙행정기관은 국가행정사무를 담당하여 전국적 관할권을 보유한 행정기관 : 18부 5처 17청 2원 4실 6위원회
-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정부조직법 또는 개별법)로 정함
- 중앙행정기관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6개 위원회로 구분 됨
  - 독립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정부조직(국가행정기관)에 포함되어 있는 위원회이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위원회
  - 대통령 소속 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회	근거 법령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Ⅲ. 운영체계 재설정 실행방안 구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체계 재설정 연구

2. 예술위 독립성 제고 실행방안 구상

2) 실행방안 구상

(2) 중앙행정기관위원회 유형

2	중앙행정기관위원회 유형

■ 국가인권위원회

- 대한민국의 고도로 독립된 국가기관. 입법부(국회), 사법부(대법원), 행정부(청와대) 세 군데 모두에게서 업무 지휘를 받지 않는,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 사실상 준 헌법기관임
- (인권위법 제3조 제2항)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사법,행정 등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국가기구로서 누구의 간섭이나 지휘를 받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정해진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독립기구

설립배경	•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사회의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민주화와 인권개선을 위한 국민들의 오랜 열망, 수년에 걸친 인권시민단체의 노력, 그리고 정부의 의지가 함께 어우러져 출범
설립근거	• '국가인권위원회법' 에 의해 독립성을 규정(제3조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하며, 행정 기관, 인권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의를 규정(제20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하고 있음
연혁	• 1993년: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대회에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참가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국가인권기구 설치를 요청 • 1998년: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 (공추위) 결성 하여 "법무부 산하기관화 반대, 헌법기관에 준하는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요구" •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조직	• 11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하며, 1명은 위원장을, 3명은 상임위원으로 함 •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4명은 국회가 선출,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4명은 대통령이 지명, 나머지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여 대통령이 임명함 •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침해구제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 • 현재 설치된 소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침해구제제 1 · 2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소관 사무	• 인권에 관한 법령 · 제도 · 정책 · 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Ⅲ. 운영체계 재설정 실행방안 구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체계 재설정 연구

2. 예술위 독립성 제고 실행방안 구상

2) 실행방안 구상

(2) 중앙행정기관위원회 유형

2	중앙행정기관위원회 유형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는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소정의 사항에 대하여는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이 미치지 않음(정부조직법 제18조의 적용 제한)(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설립배경	• 2008년 2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 이 통과되면서, 2000년 이후 논의되어 왔던 통합규제기구가 출범 • 분산되어 있던 방송 · 통신 정책 및 규제기능을 단일 통합기구가 담당
설립근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연혁	• 1981년 03월 07일: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위원회 설치 • 2008년 02월 29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전파 · 통신에 관한 사무와 정보통신부로부터 전파관리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아 방송통신위원회로 개편 • 2013년 03월 23일: 방송 · 통신의 융합 · 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사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조직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추천한 2명, 국회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3명을 대통령이 지명 •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 중 1명은 부위원장을 겸직 • 소관 사무에 관한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 · 의결사항에 관한 사전검토를 위해 전문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음
소관 사무	• 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방송진흥기획, 방송정책기획, 지상파방송정책, 방송채널정책에 관한 사항 • 조사기획총괄, 방송통신시장조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 시청자 권익증진, 개인정보보호윤리에 관한 사항 •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2. 예술위 독립성 제고 실행방안 구상

2) 실행방안 구상

(3) 해외 사례 : 문화예술 관련 위원회 유형

1 해외 사례 종합 : 문화예술 관련 위원회 유형

기관	조직특성	정부와의 관계
영국 예술위원회	• 중앙위원회(NationalCouncil) – 최고 정책결정기구(governingbody) – 위원 15명(위원장 1명 +지역예술위원회 위원장 9명+위원 5명) – 지역, 인종, 문화, 종교 등 안배. 위원은 주로 예술행정 전문가이고 특정정당이나 특정 장르에 대한 대표성은 없음 – 문화미디어체육부 장관이 임명 – 무보수, 임기 4년, 중임 가능 • 집행부(ExecutiveBoard) – 예술행정 집행의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짐 – 집행이사 12명(사무총장 1명/지역예술위원회 사무총장 9명/집행이사 2명) – 사무총장은 위원회에서 지명하고 문화미디어체육부장관이 승인 – 직원(Staff):20여개 사무소에 700명 내외(지역위원회 포함) ※ 중앙위원회와 지역위원회 통합 구조	– 팔길이원칙 : 법적인 제도가 아닌 관례 – 규제화된 제도 없음 – 재정지원협약서로 설정 ※ 문화정책이 예술 정책이라는 불문율, 예술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바탕
미국 국립예술 기금	• 연방 국가 차원의 문화예술관련 집행 기구 – 위원 :14명(대통령이 지명) + 6명(의회 지명, 겸직 허용, 투표권 없음) – 미국연방차원의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된 지원정책의 수립 및 지원사업 수행 – 국립예술 기금위원회는 매년 기금의 40%를 정액 교부금 형태로 주 예술기구(State Arts Agencies)에 배분하여 관할지역에 지원함	– 정부 부처 없음 ※ 독립성 높음
프랑스 문화통신부	• 기금 분배 예술기구 없음. 프랑스의 예술지원정책은 국가가 예술가를 보호하고 후견하는 역할을 자임한다는 특징이 있음 • 중앙정부 주도의 포괄적 정책 운영 • 예술분과 별 국립진흥원 설치하여 집중지원 • 문화통신부 산하 기관 : 국립조형미술진흥원, 국립무용진흥원, 국립영화진흥원, 국립도서진흥원, 국립연극진흥원 • 국민의 문화에 대한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서비스로 인식	– 비영리기구 통한기금사업이 없고 중앙 행정체계에서 진흥의 업무를 수행함

2. 예술위 독립성 제고 실행방안 구상

2) 실행방안 구상

(4) 독립성 제고 운영체계 유형 검토

구분	특성	실효성	실현성
행정위원회 유형	• 행정기관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하거나, 준입법적 ·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 • 국가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이 있고, 사무국(처) 등 하부조직을 설치할 수 있는 위원회 •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준입법적 기능 및 이의의 결정 등 재결을 행할 수 있는 준사법적 권한 소유	◕	◑
자문위원회 유형	•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행정기관에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 · 조정 · 협의 •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위원회로, 그 의사결정은 일반적으로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집행함 • 대부분 비상설 위원회로 구성되며, 원칙적으로 사무기구를 둘 수 없음 • 업무 내용이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거나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치 • 그 결정이 행정기관을 법적으로 기속하는 위원회(예) 최저임금위원회, 중앙징계위원회 등 • 그 결정이 행정기관을 법적으로 기속하지 않는 위원회(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등이 이에 해당	◔	◕
중앙행정기관위원회 유형	• 중앙행정기관으로 정부 조직 • 정부조직도 기구로 표기됨	◑	◔
Recommendation	행정위원회 유형(1순위), 중앙행정기관위원회 유형(2순위)		

Ⅲ. 운영체계 재설정 실행방안 구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체계 재설정 연구

2. 예술위 독립성 제고 실행방안 구상

3) 실행방안 내용

1 행정위원회 유형 구상

기조	•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사권과 예산권 관리로부터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행정위원회 유형으로 구성 및 운영 • 현장중심의 행정예술 지원체계 정립 – '국민주권, 소통, 참여' 라는 시대정신을 실현하고, 새로운 정책수요 증가 등 예술환경 변화에 대응 •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민간자율 지원 정책기구 – 변화하는 예술환경에 예술인 스스로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예술정책에 대한 의제를 스스로 설정하고 논의하는 구조 형성 – 문화체육관광부와 위원회간 역할 분담을 통해 지원정책업무는 위원회에서 수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단위 정책 형성 및 지원정책 수립과 평가 수행 • 문화예술에 관한 적절한 의제 설정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합의 · 공론형 자율 정책 기구 • 행정위원회 유형으로 운영체계 변화에 따른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명칭 변경 검토
역할	• 자주성과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국가차원의 민간 자율기관 • 문화현장과 직결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예술지원기관 • 정부 문화예술정책과 연계한 지원정책의 추진 기관 • 민간 자율적인 정책의제 설정 및 민주적 참여 보장 기관
유형	•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 유형 – 유사사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 유형 – 유사사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Ⅲ. 운영체계 재설정 실행방안 구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체계 재설정 연구

2. 예술위 독립성 제고 실행방안 구상

3) 실행방안 내용

1 행정위원회 유형 구상

유형 비교

구분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
주요 기능	• 문화예술지원 통할적 기획 기능 • 문화예술지원 유관기관 컨트롤타워(기능조정 및 협업 관리) • 유관기관 간 기획 · 조정관리 · 심의 · 사업평가	
업무 영역	• 창작지원 총괄적 기능+창작지원과 관련된 향유 지원 + 환경조성(유통, 문화산업으로 발전(콘텐츠화) 등 관련 지원) +일반시민/소외계층 등의 향유 지원 * 창작지원의 개념=창작활동지원+예술인력육성+국제교류	
필요 사항	• 문화예술 지원체계 관리자 역할(권한) 부여 등이 포함 된 "국가예술위원회법" 마련 필요	
기대 효과	• 문화예술지원체계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 장르에 구분없이 통합적 · 거시적 · 중장기적 관점의 문화예술 기획 • 현장 예술가들의 참여기회 확대 및 정책반영도 증대 • 창작지원과 관련된 모든 사업영역을 자율적으로 직접 관장 • 통합적 · 거시적 문화예술 기획 가능 및 창작지원 전문성 제고	
장점	• 문화예술 지원 독립성 강화 • 기관 위상 강화, 문화예술인 자긍심 제고	• 실행 가능성 상대적 높음 • 문체부 업무 관련 유사사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단점	• 실행 가능성 상대적 미약	•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에 비해 기관 위상 상대적 미흡 •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에 비해 독립성 상대적 미흡
Recommend ation		✓

Ⅲ. 운영체계 재설정 실행방안 구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체계 재설정 연구

2. 예술위 독립성 제고 실행방안 구상

3) 실행방안 내용

1 행정위원회 유형 구상

	구분	내용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	명칭	· 국가예술위원회(1안), 국가문화예술위원회(2안)	
	소속 및 성격	소속	성격
		국무총리	행정위원회
	설치 근거	· (가칭)국가예술위원회법	
	설치 목적	· 현장중심의 행정예술 지원체계 정립 · 예술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수요자중심 지원체계구축 · 변화하는 예술환경에 예술인 스스로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예술정책에 대한 의제를 스스로 설정하고 논의	
	주요 기능	· 문화예술지원 통합적 기획 기능 · 문화예술지원 유관기관 컨트롤타워(기능조정 및 협업 관리) · 유관기관 간 기획 · 조정관리 · 심의 · 사업평가	
	전체 위원회 구성	· 위원장, 위원(위촉직 위원, 당연직 위원) – 위원장 :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중 호선 – 위촉직 위원 : 국무총리 및 국회에서 추천(공개추천)한 자를 국무총리가 위촉 – 당연직 위원 : 문체부 차관(문화예술 관련 차관), 기재부 차관(기금 관련 차관), 행안부 차관을 국무총리가 임명	
	소위원회 및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및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인력은 현장성과 전문성 있는 민간 예술가 중심 위촉 · 지역별/장르별/기능별 위원회로 구성 · 위원장이 위촉	
	사무처 구성	· 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 조직, 사무처 직원 신분 변화	

Ⅲ. 운영체계 재설정 실행방안 구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체계 재설정 연구

2. 예술위 독립성 제고 실행방안 구상

3) 실행방안 내용

1 행정위원회 유형 구상

		구분	내용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	독립성 확보 검토요소	위원 신분보장	·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음
		심의 업무 독립성	· 심의에 있어 외부로부터의 불간섭, 심의위원들의 자격요건에 공정성 요건 강화
		업무수행 독립성	· 정부, 예술가 및 예술단체로부터의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업무수행 원칙 유지
		업무수행 견제와 균형성	· 위원회, 기능별 소위원회, 분야별 지원심의위원회, 사무처 설치로 기능을 분산시키며 정책기능과 심의기능, 집행 및 평가기능이 분산 되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함 · 위원 간의 갈등구조 발생으로 인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지연 등 비효율적 측면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능별로 최대한의 자율적 결정구조를 가지도록 하되, 위원장의 조정기능 강화
		업무수행 참여성	·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다양한 문화예술인들과 시민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문화예술창작과 향유기능 충족 · 지원사업에 대한 다양한 방법의 평가 등을 통해 사업목표에 대한 환류(feed back)장치 강화
		업무수행 전문성	· 집행기능을 전담하는 사무처의 전문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과 현장 경험의 강화 · 전문 인력의 지속적 수급 · 글로벌 기준에 부합되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문화 · 사무처 직원의 지식 공유, 소통, 역량제고

Ⅲ. 운영체계 재설정 실행방안 구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체계 재설정 연구

2. 예술위 독립성 제고 실행방안 구상

3) 실행방안 내용

2 중앙행정기관위원회 유형 구상

기조	• 문화예술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제고, 문화예술 장르별, 지역별 균형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앙행정기관위원회 • 문화예술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위원회 유형으로 구성 및 운영 중앙행정기관위원회 • '국민주권, 소통, 참여' 라는 시대정신을 실현하고, 새로운 정책수요 증가 등 예술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중앙행정기관위원회 •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문화예술지원 중앙행정기관위원회 - 변화하는 예술환경에 대응하여 예술정책에 대한 의제를 설정하고 수립하는 운영구조 • 문화예술에 관한 적절한 의제 설정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합의 · 공론형 중앙행정기관위원회 • 중앙행정기관위원회 유형으로 운영체계 변화에 따른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명칭 변경 검토
역할	• 자주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문화예술지원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 문화현장과 직결된 전문성을 가진 문화예술지원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유형	• 독립 중앙행정기관위원회 유형 - 유사사례 : 국가인권위원회 •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위원회 유형 - 유사사례 : 방송통신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위원회 유형 - 유사사례 :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Ⅲ. 운영체계 재설정 실행방안 구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체계 재설정 연구

2. 예술위 독립성 제고 실행방안 구상

3) 실행방안 내용

2 중앙행정기관위원회 유형 구상

최근 동향

MK 매일경제 MBN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11. 21) 개편 관련 기사내용 요약

• 지난 15일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가 분담하고 있던 관련 업무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되고 조사 기능이 신설되는 등 권한이 강화
- 개인정보 정책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을 위원회 산하로 이관하고 방통위는 개인정보침해조사과, 개인정보보호윤리과 등을 넘길 것으로 보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실은 그대로 산업 측면 개인정보 활용 관련 정책 기능을 수행하고,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소관 부처로 온라인상 개인정보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 관리 기능은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
- 행안부가 관련 부처 간 통합 등 조직 구성을 고민하는 과정에서도 시민단체와 만나며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편방향〉

구분	내용
위상	•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
조직	• 30명~40명 규모 민간인 → 행안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정부부처 일부 이전
기능	• 분쟁조정 및 국제협력 기구 → 정보보호 규제 총괄 컨트롤타워
권한	• 조사 및 처분 권한 없음 → 정부 각 부처에 조사 및 처분 의견 제시권

Ⅲ. 운영체계 재설정 실행방안 구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체계 재설정 연구

2. 예술위 독립성 제고 실행방안 구상

3) 실행방안 내용

2 중앙행정기관위원회 유형 구상

유형 비교

구분	독립 및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위원회
주요 기능	· 문화예술지원 통합적 기획 기능 · 문화예술지원 유관기관 컨트롤타워(기능조정 및 협업 관리) · 유관기관 간 기획 · 조정관리 · 심의 · 사업평가	
업무 영역	· 창작지원 총괄적 기능+창작지원과 관련된 향유 지원 + 환경조성(유통, 문화산업으로 발전(콘텐츠화) 등 관련 지원) +일반시민/소외계층 등의 향유 지원 * 창작지원의 개념=창작활동지원+예술인력육성+국제교류	
필요 사항	· 문화예술 지원체계 관리자 역할(권한) 부여 등이 포함 된 "국가예술위원회법" 마련 필요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실 기능 이관 · 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위원회 소속 집행업무 담당 기관	
장점	· 합의제중앙행정기관으로 문화예술 지원정책 집행력 강화 · 문화예술지원 총괄기구로 업무 효율성 제고	· 합의제중앙행정기관으로 문화예술 지원정책 집행력 강화 · 문화예술지원 총괄기구로 업무 효율성 제고 · 독립 및 대통령 소속 위원회에 비해 실행 가능성 높음
단점	· 중앙행정기관으로 문화예술인 자율성 및 참여성 미흡 · 중앙행정기관 유형 위원회에 대한 문화예술인 부정적 인식 · 실행 가능성 상대적 미약	· 중앙행정기관으로 문화예술인 자율성 및 참여성 미흡 · 중앙행정기관 유형 위원회에 대한 문화예술인 부정적 인식
Recommend ation		✓

Ⅲ. 운영체계 재설정 실행방안 구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체계 재설정 연구

2. 예술위 독립성 제고 실행방안 구상

3) 실행방안 내용

2 중앙행정기관위원회 유형 구상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구분	내용	
명칭	· 국가예술위원회(1안), 국가문화예술위원회(2안)	
소속 및 성격	소속	성격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위원회
설치 근거	· (가칭)국가예술위원회법	
설치 목적	· 현장중심의 행정예술 지원체계 정립 · 예술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구축 · 변화하는 예술환경에 대응하여 예술지원 정책 추진	
주요 기능	· 문화예술지원 통합적 기획 기능 · 문화예술지원 유관기관 컨트롤타워(기능조정 및 협업 관리) · 유관기관 간 기획 · 조정관리 · 심의 · 사업평가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실 기능(예술정책과, 공연전통예술과, 시각예술디자인과, 문화예술교육과 등) 수행	
전체 위원회 구성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상임위원, 비상임위원)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비상임 위원은 국무총리 및 국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대통령이 위촉	
분야별 위원회 구성	·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 인력은 현장성과 전문성 있는 민간 예술가 중심 위촉 · 지역별/장르별/기능별 위원회로 구성 · 위원장이 위촉	
사무처 구성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실 인력 중심 구성 · 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국가예술위원회 집행 기구 역할	

Ⅲ. 운영체계 재설정 실행방안 구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체계 재설정 연구

3. 예술위 자율성 제고 실행방안 구상

1) 실행방안 기반분석

환경 관점

1 예술위 외부환경 관점

예술위 외부환경 변화

- 신 문화행정체계 구축 · 문화예술 다양성 및 창의성 발현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체계 혁신
- 국민 신뢰 회복 ·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및 완전한 문화예술계 적폐 청산을 위한 운영체계 구축
- 국민 문화권 강화 · 국민 및 문화예술인 모두의 문화예술 표현 및 향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한 문화예술 정책 실현
- 소통과 협력 · 국민 · 문화예술인과 상시적으로 소통 · 협력을 통한 국민 중심의 문화예술 지원

- 문화예술 다양성 및 창의성 발현을 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체계 자율성 강화
-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및 완전한 문화예술계 적폐 청산 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체계 자율성 강화
- 국민 및 문화예술인 문화권 강화를 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체계 자율성 강화
- 국민과 문화예술인, 현장과 소통 강화를 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체계 자율성 강화

Ⅲ. 운영체계 재설정 실행방안 구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체계 재설정 연구

3. 예술위 자율성 제고 실행방안 구상

1) 실행방안 기반분석

환경 관점

2 예술위 내부환경 관점

예술위 내부환경 변화

- 현장기반 지원정책 · 문화예술인과 소통 · 협치를 통한 현장 밀착형 문화예술 지원 정책 수립 및 집행
- 대내 · 외 고객만족 · 문화예술 지원 역량강화에 기반한 예술위 대내 · 외 고객만족도 제고
- 선제적 변화대응 · 급변화는 문화예술 대내 · 외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하고 신속한 지원정책 수립체계 구축
- 대상별 맞춤형 지원정책 · 분야, 지역, 연령, 성별 등 지원정책 대상 명확화 및 대상별 맞춤형 정책 수립 · 집행을 통한 문화예술 지원정책 효과성 제고

- 현장 밀착형 문화예술 지원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체계 자율성 강화
- 문화예술 지원 역량강화 기반 대내 · 외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체계 자율성 강화
- 급변화는 문화예술 대내 · 외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체계 자율성 강화
- 대상별 맞춤형 정책 수립 · 집행을 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체계 자율성 강화

Ⅲ. 운영체계 재설정 실행방안 구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체계 재설정 연구

3. 예술위 자율성 제고 실행방안 구상

1) 실행방안 기반분석

제도 관점

1 2018년도 예술위 경영평가 기준(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기재부)

- 경영평가는 기본적으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공통된 틀로 평가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주요 평가요소인 수익성, 경제성, 효율성에 대하여 유형적 및 정량적 수치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음
- 문화예술 분야 사업은 창의성 및 다양성이 중요한 분야로 공통된 틀로 평가하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는 예술위를 평가하는데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문화예술 분야 사업은 경영평가 기조인 수익성 · 경제성 · 효율성 평가, 유형적 및 정량적 평가와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조		문화예술 특성
획일성	↔	창의성, 다양성, 차별성
수익성	↔	공익성
경제성	↔	가치성
효율성	↔	효과성
유형적 및 정량적	↔	무형적 및 정성적

- 현재 공운법에 제48조에 따르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경영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예술위가 현재와 같은 공운법 상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이 분류되는 한 공운법 제48조에 의하여 경영평가를 받아야 함

- 문화예술 분야 사업의 특성을 고려 할 때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 의한 예술위 평가는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문화예술 특성 : 창의성, 다양성, 차별성, 공익성, 가치성, 효과성, 무형적 및 정성적
- 따라서 예술위의 공공기관 유형변경 방안을 검토함

Ⅲ. 운영체계 재설정 실행방안 구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체계 재설정 연구

3. 예술위 자율성 제고 실행방안 구상

2) 실행방안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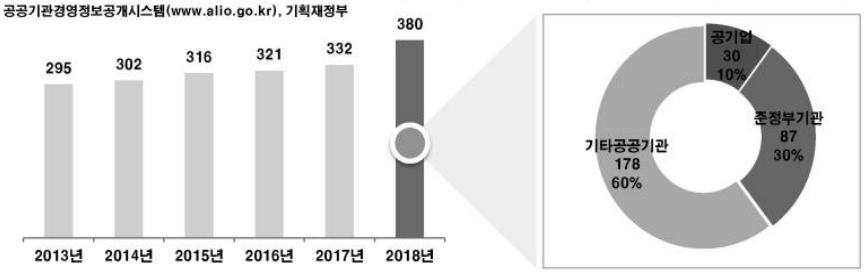
- 자율성 제고를 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체계 재설정 방안으로 공공기관 유형변경을 검토함
- 공공기관 유형변경 방안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하는 방안과 공운법(공공기관) 제외 방안을 검토함

공공기관 현황분석

1 공공기관 유형별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공기업	소계	30	30	30	30	35	35
	시장형	14	14	14	14	14	15
	준시장형	16	16	14	16	21	20
준정부기관	소계	87	87	86	89	89	93
	기금관리형	17	17	17	16	16	16
	위탁집행형	70	70	69	73	73	77
기타공공기관		178	185	200	202	208	210
계		295	302	316	321	332	380

자료 :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alio.go.kr), 기획재정부



- 공공기관은 2013년 295개에서 2018년 380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2018년 기준 전체 공공기관 380개 중 공기업 30개(10%), 준정부기관 87개(30%), 기타공공기관 178개(60%)로 나타남
- 예술위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됨

Ⅲ. 운영체계 재설정 실행방안 구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체계 재설정 연구

3. 예술위 자율성 제고 실행방안 구상

2) 실행방안 구상

공공기관 현황분석

1 공공기관 유형별 관리체계

구분	법조항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시장형	준시장형		
통합공시	제12조	적용	적용	적용	적용
고객만족도조사	제13조	적용	적용	적용	적용
기능조정	제14조	적용	적용	적용	적용
경영혁신	제15조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이사회의장	제18조	선임비상임이사	선임비상임이사 (2조원미만:기관장)	기관장	규정 없음
감사위원회	제20조	필수	필수 (2조원미만:임의)	임의	
임원 임면	제25조 제26조	• 기관장 : 대통령 • 상임이사 : 기관장 • 비상임이사 : 기재부장관 • 감사 : 대통령		• 기관장 : 주무기관장 • 상임이사 : 기관장 • 비상임이사 : 주무기관장 • 감사 : 기재부장관	
예산안 확정	제40조	이사회 의결		주무기관장 승인	
결산서 제출	제43조	기재부장관 · 주무기관 승인, 감사원 검사 후 국회 제출			
경영실적평가	제48조	적용	적용	적용	
경영지침	제50조	적용	적용	적용	
감사원감사	제52조	적용	적용	적용	
감독	제51조	• 기재부장관 : 경영지침 이행 • 주무기관장 : 소관업무		주무기관장	

• 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 유형별 관리체계를 정리하면 통합공시, 고객만족도조사, 기능조정, 경영혁신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공통으로 적용되며, 이사회의장~감독 등 9개 항목에 대해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Ⅲ. 운영체계 재설정 실행방안 구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체계 재설정 연구

3. 예술위 자율성 제고 실행방안 구상

2) 실행방안 구상

2 자율성 제고 공공기관 운영체계 유형 검토

구분	내용	장 · 단 점		실효성	실현성
기타공공기관 유형 변경	• 예술위를 공운법상의 공공기관으로 존치 시킨 상태에서 공운법상 기관 유형을 기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하는 방안	장점	•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음 •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을 변경함에 따라 예술위 자율성 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함	◑	◕
		단점	• 통합공시, 고객만족도조사, 기능조정, 경영혁신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공운법에 적용을 받음 • 준정부기관으로 편입될 여지가 있음		
공운법 제외	• 예술위를 공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제외시키는 방안	장점	• 예술위가 공운법에서 제외 됨으로써 기관 운영 자율성 확보 가능	◕	◑
		단점	• 정부를 제외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공공기관에 속해 있음 • 기금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에서 예술위 공운법 제외는 실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Recommendation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 변경(1순위), 공운법 제외(2순위)				

Ⅲ. 운영체계 재설정 실행방안 구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체계 재설정 연구

3. 예술위 자율성 제고 실행방안 구상

3) 실행방안 내용

1 기타공공기관 유형변경

1-1 기타공공기관 유형변경 개요

- 예술위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현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는 예술위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을 변경하는 방안
- 이를 위하여 기획재정부가 예술위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 변경하는 조치 필요
  - 공운법 제5조 :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 ·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

예술위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 예술위 기관유형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면 기존 공운법에 의하여 적용 받던 임원 임면, 기관장과의 계약, 예산안 확정, 결산서 제출, 경영실적평가, 경영지침. 감사원 감사, 감독 관련 사안에서 어느 정도 자율성 확보가 가능함

구분	법조항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경영공시	제11조		
통합공시	제12조	적용	적용
고객만족도조사	제13조	적용	적용
기능조정	제14조	적용	적용
공공기관경영혁신	제15조	적용	적용
이사회구성	제18조	기관장	규정 없음
감사위원회	제20조	임의	
임원 임면	제25조 제26조	· 기관장 : 주무기관장 / 상임이사 : 기관장 · 비상임이사 : 주무기관장 / 감사 : 기재부장관	
기관장과의 계약	제31조	적용	
예산안 확정	제40조	주무기관장 승인	
결산서 제출	제43조	기재부장관 · 주무기관 승인, 감사원 검사 후 국회 제출	
경영실적평가	제46조~제48조	적용	
경영지침	제50조	적용	
감사원감사	제52조	적용	
감독	제51조	주무기관장	

Ⅲ. 운영체계 재설정 실행방안 구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체계 재설정 연구

3. 예술위 자율성 제고 실행방안 구상

3) 실행방안 내용

1-2 기타공공기관 유형변경 방안

- 예술위의 기타공공기관 유형으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는 유형변경 대상기관 통보, 주무기관과 협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 의결, 유형변경 고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유형변경 대상기관 통보 : 기재부장관이 문체부장관에게 예술위가 유형변경 대상기관임을 통보
- 주무기관과 협의 : 예술위 유형 변경지정(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 기재부장관과 문체부장관 협의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 의결 : 예술위 유형 변경지정안(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함
- 유형변경 고시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 결과에 따라 기재부장관이 예술위 유형 변경지정(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고시

유형변경 대상기관 통보	주무기관과 협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 의결	유형변경 고시
기재부장관→문체부장관	예술위 유형 변경지정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 기재부장관과 문체부장관 협의	예술위 유형 변경지정안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심의 · 의결	예술위 유형 변경지정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고시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이내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이내

Ⅲ. 운영체계 재설정 실행방안 구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체계 재설정 연구

3. 예술위 자율성 제고 실행방안 구상

3) 실행방안 내용

2 공운법 제외

- 공운법 제4조 제1항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 가능한 기관 조건을 제시함과 동시에 제4조 제1항의 조건을 충족하였음에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는 사항을 제2항에 별도로 제시하고 있음
- 제2항 제3호의 경우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경우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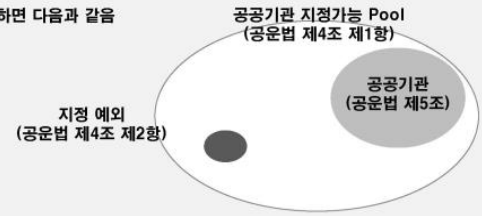
-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중략〉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 문체부 소관 기관 중 서울예술단, 국립합창단,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의 경우 2009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 된 것으로 나타남
  - 예술창작법인 사유로 인해 공공기관 지정해제
- 공운법 제4조 제1항과 제2항, 문체부 소관 기관의 공공기관 지정해제 기관 사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 공운법 제4조 제1항 조건을 충족하는 기관 중 일부를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공운법 제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외 조항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대상에서 법적으로 제외할 수 있음
  - 공공기관으로 기 지정된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제외 될 수 있음



Ⅲ. 운영체계 재설정 실행방안 구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체계 재설정 연구

3. 예술위 자율성 제고 실행방안 구상

3) 실행방안 내용

2-1 공운법 제외 개요

- 예술위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현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는 예술위를 공운법에서 제외하는 방안
- 이를 위하여 기획재정부가 예술위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서 공공기관 대상으로부터 지정 해제하는 조치 필요
-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따라 예술위는 공운법 적용을 받지 않는 문체부 산하기관으로의 지위

예술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공운법 적용을 받지 않는 문체부 산하기관

- 공공기관 지정 해제 방안
  - 공운법 개정을 통한 지정해제 방안 : 예술위를 공운법에서 제외하는 사항을 법률로 규정 필요, 사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 기재부에 의한 지정해제 : 사례(문체부 산하기관 : 서울예술단, 국립합창단,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등)

2-2 공운법 제외 방안(1) : 공운법 개정을 통한 지정해제

- 공운법 제4조(공공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개정 2007. 12. 14., 2008. 2. 29.〉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 공운법 제4조(공공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개정 2007. 12. 14., 2008. 2. 29.〉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 예술위 자율성 제고 실행방안 구상

3) 실행방안 내용

2-3 공운법 제외 방안(2) : 기재부에 의한 지정해제

- 예술위의 공운법 상 공공기관 지정해제 절차는 지정해제 대상기관 통보, 주무기관과 협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 의결, 지정해제 고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지정해제 대상기관 통보 : 기재부장관이 문체부장관에게 예술위가 공운법 상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 대상기관임을 통보
- 주무기관과 협의 : 예술위 지정해제에 대하여 기재부장관과 문체부장관 협의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 의결 : 예술위 지정해제안에 대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함
- 지정해제 고시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 결과에 따라 기재부장관이 예술위 지정해제 고시

지정해제 대상기관 통보	주무기관과 협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 의결	지정해제 고시
기재부장관→문체부장관	예술위 공운법 상 공공기관 지정해제에 대하여 기재부장관과 문체부장관 협의	예술위 공운법 상 공공기관 지정해제안 심의 · 의결	예술위 지정해제 고시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이내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이내

3. 예술위 자율성 제고 실행방안 구상

3) 실행방안 내용

3 기타공공기관 유형 변경 및 공운법 제외에 따른 검토요소

3-1 위원장 호선제 도입

- 문화예술진흥법 제24조에 따르면 현재 예술위 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음
- 공운법 제26조에서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공운법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①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 예술위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 변경 및 공운법에서 제외 될 경우 위원장 임명에 있어서 공운법 26조는 적용 받지 않음
- 따라서, 예술위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 변경 및 공운법에서 제외 될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24조를 변경함으로써 예술위 위원장 임명에 관한 사안을 변경할 수 있음
- 예술위 기관운영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들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는 방안 검토

3-2 위원추천위원회 구성

-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에 따르면 현재 예술위 위원추천위원회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위촉하는 것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인 지원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예술위 자율성 제고 방안으로 문화예술인 중심의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 검토

3-3 위원장 · 위원 임기 일치

- 문화예술진흥법 제25조에 따르면 현재 예술위 위원장 임기는 3년, 위원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음
- 예술위 예술지원 정책수립 및 사업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위원장과 위원 임기를 3년으로 일치시키는 방안 검토

Ⅲ. 운영체계 재설정 실행방안 구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체계 재설정 연구

3. 예술위 자율성 제고 실행방안 구상

3) 실행방안 내용

3-4 감사 임명

- 공운법에 따른 예술위 기관유형이 변경(기타공공기관 혹은 공운법 적용을 받지 않는 문체부 산하기관)됨에 따라 감사 등 임원 임명에 대한 사항 검토 필요
  - 기타공공기관 유형 : 공운법에 감사 임명에 대한 규정 없음. 기타공공기관 감사 임명은 개별법에 의해 규정
  - 공운법 제외 유형 : 공운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 개별법에 의해서 규정

3-5 경영성과 평가

- 공운법에 따른 예술위 기관유형이 변경(기타공공기관 혹은 공운법 적용을 받지 않는 문체부 산하기관)됨에 따라 예술위 경영성과 평가에 대한 부분 검토가 필요
  - 공운법에 따른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평가방안
  - 문체부와 예술위 간 자율경영협약서에 의한 평가방안

3-6 인력운영

- 예술위는 현재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예술위의 정원조정을 위해서는 문체부를 거쳐 기재부와 협의 하도록 되어 있음
- 해당 지침은 공운법 법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적용 되는 사안으로 예술위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공운법(공공기관)에서 제외 될 경우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음

3-7 예술위 운영 투명성 확보방안

- 예술위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공운법(공공기관)에서 제외 될 경우 예술위 운영 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예술위 운영 투명성 확보방안은 평가에 의한 투명성 확보방안과, 정보공개에 의한 투명성 확보방안, 소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한 투명성 확보방안 등이 있음
  - 평가에 의한 투명성 확보방안 : 예술위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공운법(공공기관)에서 제외 될 경우에도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법에 의하여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 정보공개에 의한 투명성 확보방안 : 예술위 운영 성과, 임원 보수, 기관 운영에 관한 연차 보고서 발간 및 홈페이지 공시
  - 소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한 투명성 확보방안 : 현장 문화예술인 중심 소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채용비리, 예술위 방만경영 등을 통제

Ⅲ. 운영체계 재설정 실행방안 구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체계 재설정 연구

4. 예술위 책무성 제고 실행방안 구상

1) 실행방안 기반분석

환경 관점

1 예술위 외부환경 관점

예술위 외부환경 변화

- 국민 친화형 문화예술 지원정책 수립
  - 국민 친화형 문화예술 지원정책 수립 및 사업운영을 위한 운영체계 구축
- 문화예술 중립성 확보
  - 문화예술 지원에 있어 정치 · 문화적으로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운영체계 구축
- 중 · 장기적 관점의 문화예술 진흥
  - 단기 성과위주에서 중 · 장기적 관점으로 문화예술 지원정책 수립 및 집행 패러다임 전환 필요
- 문화예술 가치창출
  - 문화예술 발전을 통한 경제적 ·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운영체계 구축

- 국민 친화형 문화예술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체계 책무성 강화
- 문화예술 중립성 확보 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체계 책무성 강화
- 중 · 장기적 관점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체계 책무성 강화
- 문화예술 가치창출을 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체계 책무성 강화

Ⅲ. 운영체계 재설정 실행방안 구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체계 재설정 연구

4. 예술위 책무성 제고 실행방안 구상

1) 실행방안 기반분석

환경 관점

2 예술위 내부환경 관점

예술위 내부환경 변화

현장 밀착형 문화예술 지원정책 수립	• 문화예술인 및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현장 밀착형 문화예술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운영체계 구축
문화예술 지원 유연성 확보	• 환경변화 및 사안별 능동적 대처를 위한 문화예술 지원정책 및 사업의 유연성 확보
문화예술 지원사업 효율적 수행	•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예술위 운영체계 구축
문화예술 진흥 중추기관	• 문화예술 발전 및 진흥 중추기관으로써 역할 및 책임성 강화

- 현장 밀착형 문화예술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체계 책무성 강화
- 문화예술 지원 유연성 확보를 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체계 책무성 강화
- 문화예술 지원사업 효율적 수행을 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체계 책무성 강화
- 문화예술 발전 및 진흥 증추기관으로써 역할 수행을 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체계 책무성 강화

- 45 -

Ⅲ. 운영체계 재설정 실행방안 구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체계 재설정 연구

4. 예술위 책무성 제고 실행방안 구상

2) 실행방안 구상

- 책무성 제고를 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체계 재설정 방안으로 자율경영협약서 도입방안을 검토함
- 자율경영협약서 도입방안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간 자율경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함

1 영국문화부와 영국예술위원회 간의 운영 협약문(Management Agreement)
-영국문화부와 영국예술위원회 간의 운영 협약문(Management Agreement) 사례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

1-1 운영 협약문 개요

연혁	• 2012년 영국문화부와 영국예술위원회 사이의 2012-2015년 운영협약서로서 시작됨 - 2012년 이전에는 영국문화부와 영국지역예술위원회 사이의 지원금 협약문(funding agreement)으로 존재 - 2018년 현재 '운영협약문 2016-2020'(Management Agreement 2016-2020)으로써 협력 관계 유지
도입목적	• 영국문화부와 영국예술위원회 두 기관이 영국 예술 진흥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방안을 위해 도입
협약서 성격	• 예술위원회의 운영 체계를 규정해 놓은 문서 • 예술위원회 재정 운영 방안 지침서 •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재원의 쓰임의 효과성,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운영 협약 - 문화부의 정책 우선순위 및 우선순위에 발맞춘 예술위원회의 전략적 목표, 예술위원회 재정 통제(위임된 재정 범위 등), 예술위원회 운영체계 및 책임성(위원장/개별 위원, 회계사 등의 책임), 내외부 감사 등이 포함된 예술위원회 재정 운영 방안 지침서
주요 특성	• 민간 전문가 집단(영국예술위원회)과 협약을 통해 국가적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영국 정부의 협력적 사업 운영의 주요한 방식 - 민간 전문가 집단을 비정부 공공기관(non-governmental public body)으로 설정하여 정부 부처와 협약을 맺어 사업 운영 • 문화예술에서의 국가 개입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협약을 맺은 민간 전문가 집단은 예술지원금(grant-in-aid)의 분배에 있어서 독자적 권한(독립성 : arm's length principle)을 가지게 됨 - 영국문화부 외의 다른 부서들은 협약을 맺은 전문가 집단에게 재정 분배에서의 독립성을 영국문화부와 예술위원회의 독립성만큼 허용하지 않고 있음

- 46 -

Ⅲ. 운영체계 재설정 실행방안 구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체계 재설정 연구

4. 예술위 책무성 제고 실행방안 구상

2) 실행방안 구상

1	영국문화부와 영국예술위원회 간의 운영 협약문(Management Agreement) -영국문화부와 영국예술위원회 간의 운영 협약문(Management Agreement) 사례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	
1-2	운영 협약문 구조	
운영 협약문 구조	• 영국문화부와 영국예술위원회 간 운영 협약문(Management Agreement)은 총 3개 Part로 구성되어 있음. Part A는 정책 우선순위, 재원조성, 만남/접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Part B는 영국예술위원회의 재정 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고있음 • Part C는 예술위원회 주체별 역할 및 책임, 예술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Part A	Priorities, Funding and Engagement - 정책 우선순위, 재원조성, 만남/접촉에 대한 사항을 구정하고 있음
		• 정책 우선순위(Priorities) • 재원 할당(Financial Allocation) • 성과 측정(Performance Measures) • 만남/접촉(Engagement)
	Part B	FINANCIAL CONTROLS - 영국예술위원회의 재정 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고 있음
		• 위임된 재정 범위(Delegated Financial Limits) • 지출 통제(spend controls) • 조달(procurement) • 효율성(efficiency) • 운영 정보(management information)

- 47 -

Ⅲ. 운영체계 재설정 실행방안 구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체계 재설정 연구

4. 예술위 책무성 제고 실행방안 구상

2) 실행방안 구상

1	영국문화부와 영국예술위원회 간의 운영 협약문(Management Agreement) -영국문화부와 영국예술위원회 간의 운영 협약문(Management Agreement) 사례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	
1-2	운영 협약문 구조	
운영 협약문 구조	Part C	Arts Council England' s Governance Framework - 예술위원회 주체별 역할 및 책임, 예술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 규정
		• 예술위원회 운영 체계 및 회계책임성(governance and accountability) • 문화부 회계부서장의 책임(DCMS Principal Accounting Officer' s responsibilities) • 예술위원회 회계사의 책임(Arts Council England Accounting Officer' s responsibilities) • 예술 위원회 비이사회(Non-Executive Board)인 국가중앙위원회(Arts Council England' s Non-Executive Board, National Council)의 책임 • 예술위원회 위원장의 책무(The Chair' s responsibilities) • 예술위원회 개별 위원들의 책무(Individual Board members' responsibilities) • 예술위원회 출판 및 정보 전략(Publications and information strategy) • 위원회 내부 감사(Internal Audit) • 위원회 외부 감사(External Audit) • 문화부의 예술위원회 접근권(Right of access) • 공공재원의 운영 및 범정부 법인 규약 및 지침서(Managing Public Money and other government-wide corporate guidance and instructions) • 예술 위원회의 위기 대응 운영(Risk management) 및 사업 계획서 기획(Bussiness Planning) 방안 • 예술위원회 직원 운영(Arts Council England staff) • 예술위원회의 검토 및 평가(Review) • 팔길이 공공기관이 해체될 경우의 협약 내용(Arrangements in the event that an Arm' s Length Body (ALB) is wound up) • 예술위원회 예산 및 예술지원금(Budgets and Grant-in-Aid) • 예술위원회 운영 성과 문화부 보고(Reporting performance to the Department)

- 48 -

4. 예술위 책무성 제고 실행방안 구상

3) 실행방안 내용

1 문체부와 예술위 간 자율경영협약서 체결

- 예술위 책무성 제고를 위하여 문체부와 예술위 간 자율경영협약서를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함
- 자율경영협약서는 총칙, 사업운영, 예산운영, 기관운영, 경영평가, 기타사항 등으로 구성함
  - 총칙 : 협약 목적, 협약 체결, 협약 기간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사업운영 : 예술위 정책방향, 예술위 전략목표, 예술위 성과목표, 예술위 사업운영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예산운영 : 예산규모, 예산운영 기본방향, 예산운영 위임 범위, 예산운영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기관운영 : 기관운영 기본방향, 조직운영, 인력운영, 기관운영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경영평가 : 경영평가 방법, 경영평가 기준, 경영실적 보고서 작성, 경영평가 결과 활용 사항 규정
  - 기타사항 : 기관 간 협력방안, 협약 유지에 관한 사항 규정

1-1 문체부와 예술위 간 자율경영협약서(안) : 구조

Ⅰ. 총칙
1. 협약 목적
2. 협약 체결
3. 협약 기간

Ⅱ. 사업운영
1. 예술위 정책방향
2. 예술위 전략목표
3. 예술위 성과목표
4. 예술위 사업운영 계획 수립

Ⅲ. 예산운영
1. 예산규모
2. 예산운영 기본방향
2. 예산운영 위임 범위
4. 예산운영 정보제공

Ⅳ. 기관운영
1. 기관운영 기본방향
2. 조직운영
3. 인력운영
4. 기관운영 정보공개

Ⅴ. 경영평가
1. 경영평가 방법
2. 경영평가 기준
3. 경영실적 보고서 작성
4. 경영평가 결과 활용

Ⅵ. 기타사항
1. 기관 간 협력방안
2. 협약 유지에 관한 사항



주요혁신의제,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2.
사후평가를 통한 지원체계 개선

이진아
(숙명여대 한국어문학부 교수)

1. 서론

□ 본 연구의 목적은 현 심의제도의 보완장치로서 '사후평가' 강화를 통한 문화예술지원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있음

□ 본 연구의 연구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아르코 혁신 TF'의 혁신안 중 사후평가 관련 혁신 의제를 구체화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와 관련하여 현재의 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임

1) 아르코 혁신 TF의 혁신 의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는 지난 2018년 1월 8일 예술계와 국민들로부터 실추된 아르코의 신뢰를 회복하고 기관의 새로운 역할 재정립을 위하여 '아르코 혁신 TF'를 발족한 바 있음. 아르코 혁신 TF 팀은 같은 해 5월 24일 '아르코 혁신안 공청회'(오후 3시 대학로 예술가의집)를 통해 혁신안(조직혁신 10개 의제, 사업혁신 13개 의제)을 발표하였고 이어 현장 예술인들과의 질의와 토론이 진행됨

□ 사업혁신 13개 의제
- 예술위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장 예술인 의견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기초예술 중심의 지원, 창작지원 우선, 창작지원과 향유지원의 선순환적 연계
- 신진예술인 지원, 사후평가를 통한 다단계 지원 제도 도입
- 중견, 원로 예술인에 대한 사후평가 강화하여 탁월한 예술인과 단체에게 다년간 지원
- 다원예술 지원 확대
- 어린이 청소년 대상 사업 적극 발굴
- 비평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 사후평가 활용 심의제도 혁신, 현장예술인심의참여, 공유심의제, 심의결과에 대한 메타 평가 도입
- 지원절차와 정산서류 간소화
-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 장르별·분야별 최저임금 및 공정단가 기준 마련
- 예술인 일자리 발굴 매개 제안
- 워크숍, 예술캠프 등 예술인 교류 활성화
- 예술의 가치 확산 위한 사회적 경제적 효과 분석과 홍보

(* 밑줄 필자, 본 연구와 유관한 의제)

본 연구는 아르코 TF의 혁신 의제를 바탕으로, 특히 그 중 사후평가를 통한 다년간, 단계별 지원 제도 및 현장 참여형 심의제도 혁신을 중심으로 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검토하고 구체화하고자 함

2) 현 지원제도에 대한 문제제기

- 현재의 지원제도는 선정결과에 대한 예술현장의 수용도가 낮은 동시에 심의와 과정의 전문성,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각 장르별, 지원사업별, 예술가 성장단계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예술단체를 예술위 지원 방식에 맞추어 고착화시킨다는 우려도 제기 되고 있음
- 지원제도 간의 연계가 부족하고 예술가/단체의 예술적 성취 결과가 후속지원제도로 연결되지 못하여, 안정적 작업 환경을 마련하거나 성장단계별 지원을 하는 것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한다는 문제도 지적됨
- 예술위와 광역문화재단 간의 관계도 불분명하고 기관의 목표, 성격, 미션 등도 상호관련 하에 정리되지 않아, 각 중앙과 광역기관 간의 사업이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못함
- 예술위 사업이 지나치게 향유사업에 편중되어 있어 기초예술과 창작지원사업이 크게 위축되어 있으며, 나아가 예술위가 예술을 성과와 확산의 대상, 국민문화향유를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경향도 나타남

▷그러나 예술창작에 기반하지 않은 예술향유란 존재하지 않으며, 기초예술의 토대 없이 예술이 세상을 바꿀 수 없음

3) 연구 목적 및 연구 방향

□ 연구 목적

- 본 연구과제의 목적은 현재의 지원제도를 보완하는 장치로서 '사후평가 기반 예술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있음
- 사후평가는 예술가/예술단체가 이미 수행하였고 완료한 작업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비평적 질적 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의 사전심의 제도에 대한 보완으로 '평가 기반 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사후평가를 기반으로 한 지원제도를 통해 예술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방식의 다양화, 단계별 지원제도(예술가 및 예술단체 성장단계별 지원) 마련,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작업 환경 마련, 예술가 및 행정기관 양측의 행정 소모성 개선을 기대하고 있음

□ 연구 방향

① 정책과 제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예술계 참여' 강조
- 예술인 스스로 능동적으로 예술정책에 대한 의제를 설정하고 논의하는 구조 형성을 위한 제도

마련

② 사후평가를 기반으로 한 '장기/다년 지원 시스템' 마련
- 다년 지원이 필요한 사업 설계
- 예술적 성취가 뛰어난 단체/예술가의 작업에 대한 수시 지원 제도 마련

③ 심의제도 혁신, 평가 기반 마련
- 심의 및 평가를 위한 전문가 후보군[pool] 재정립
- 심의/평가자 이력제
- 심의/평가자 및 제도에 대한 메타평가
- 심의/평가자 책임 강화, 심의의 비평 기능 강화

④ 예술가의 사회적 책무 강화
- 다년 지원에 대한 사후 평가 강화, 실제 실효성 있는 사후 제재 마련
- 공적 지원에 대한 공공성 의식, 예술가의 사회적 책무 강화

⑤ 공적 지원을 받은 예술활동의 사회적 확산 제고
- 연차별 활동 과정 및 결과 공유 시스템 마련
- 사업 간 연계로 지원사업 간 선순환적 체계 마련, 사회적 확산 시스템의 기반 마련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 사업 현황 분석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립과 현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의 의미
- 2005년 8월 26일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
- 전환의 의의: **정책의 일방적인 수혜자였던 문화예술인들이 정책의 입안자이자 수행자로 진입하는 것**으로, 그동안 관습화된 문화행정체계를 혁신하고 급속히 변화하는 문화예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문화예술이 처한 각종 환경에 대한 현장 중심의 구체적인 대안 생산을 가능하게 함.
- 정책 대상: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 문화예술계 안팎에서 합의하고 있는 기초예술 분야와 문화산업의 비영리적(non-profit) 실험영역

□ 2003년 11월 15일 「문화예술위원회 설립을 위한 범 예술인 3000인 성명」에 나타난 예술위의 시대정신

- 위원회 제도의 본질적 정신은 공정성, 투명성, 독립, 자율, 민주임

①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수직적 관료중심체제를 개선하여 수평적, 민주적인 민간예술인 중심체제로 변화

② 모든 부조리와 비합리가 사라지고 모든 창작 지원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정당하게 이루어짐

③ 위원회제도가 문화예술계에 의식 개혁을 가져올 출발점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상 변천

- 예술창작사업의 위축 : 예술위는 출범 당시 예술창작활동 진흥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문화향수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순수예술창작지원 기반 강화를 우선으로 했음. 그러나 2010년 이후 예술위 지원 사업은 소외계층지원 및 문화향유사업에 집중되기 시작함. 소외계층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문화협력실 산하 '사회공헌팀'이 2014년 '문화나눔본부'로 승격, 예술진흥실 산하의 지원총괄팀, 문학팀, 시각예술팀, 공연예술팀은 창작지원부로 개편됨
-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진행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속에서 창작지원은 현저히 축소됨. 일반 공모 사업의 규모를 줄여 배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남은 예산은 예술위 자체 기획 사업으로 돌림
- 문체부 예술국과 예술위 예술진흥본부는 '2016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심의 및 지원제도 개편안'을 통해 블랙리스트 실행에 걸림돌이 되는 '공모형 지원'제도를 대폭 폐지하고 자체 '기획 사업'으로 바꾼 계획안을 마련
- 심의제도 개편안에는 블랙리스트 실행을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문가의 정성적 평가 대신 고용실적, 관객 수, 수익창출 효과 등 계량 평가지표 등으로 평가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이 들어있음
-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이루어진 예술창작지원 축소는 2018년 현재까지 회복되지 못함

□ 미션과 비전의 변화

- 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취지에 따라 2006년에 선포된 'ARKO 비전 2010'이 선포 시기 미상의 'ARKO 2020'으로 변화하면서 문화예술위원회의 미션의 중심이 이동함
- 예술위의 임무는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그 실질적 내용이 상이함. 현재의 예술위의 주 목적은 비영리 예술창작 강화에 있지 않고 소외계층 예술 향유에 있음
- 예술 창작과 향유과 이분법적으로 분리되어 있음

2) 지원 사업 구성 및 예산

□ 예술위 기금운용 사업 전반

1. 예술 창작역량 강화 사업(예술 창작지원, 예술 인력 육성)
2. 지역문화 예술진흥 사업
3. 예술가치의 사회적 확산 사업(문화예술사회적 인식 제고, 소외계층문화역량 강화)

<table>
<tr><td colspan="2">2018년도 기금 운용 규모 343,067(단위: 백만원) / 사업비 227,898 (단위: 백만원)</td></tr>
<tr><td rowspan="2">* 예술창작역량 강화 : 47,832
예술창작지원 사업비 34,191
예술인력육성 사업비 13,641</td><td>* 예술가치의 사회적 확산 : 147,970
문화예술사회적인식제고 사업비 29,851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 사업비 118,119
(기금 운영비) 18,266</td></tr>
<tr><td>* 지역 문화예술 진흥 : 32,096
지역문화예술지원 사업비 7,389
공연예술활용관광자원화 사업비 24,707</td></tr>
</table>

- 예술창작지원에 해당하는 예술 창작역량 강화 지원사업비에 비해 복지에 해당하는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 사업비가 두 배 이상임
- 전체 사업비 2,278억 9천 8백만 원(총 운용 규모 3,480억 6천 7백만 원) 중 예술창작역량강화 지원사업비는 약 1/6 가량(341억 9천 1백만원)임.
- 현재 예술창작역량강화지원사업은 예술위 사업 계획의 4대 전략 목표 중 하나에 불과하며 그 중요성도 위축됨.
- 예술 창작역량 강화 지원사업비 중 기초(순수)예술인 문학 32억, 시각예술 28억, 공연예술(연극 15억, 무용 8억2천, 전통3억7천, 음악 8억, 오페라 4억, 비평 2억, 창작실험활동 1억8천, 총 약 102억)에 비해 공연예술 중 창작 뮤지컬 21억, 창작뮤지컬 해외유통지원 7억, 공연예술창작산실 관객개발 및 유통지원 15억, 총 43억의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음.

3) 정리

✓ 전체 기금 사업 중 예술창작역량강화사업의 비중이 매우 낮음
✓ 예술위의 본래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 수행보다 문체부의 단순수탁 및 지정교부 사업비중이 매우 높음
✓ 예산상 예술창작지원기관, 그 중에서도 순수(기초)예술지원기관으로서 정체성이 소실됨
✓ 예술위 역점 사업인 “기초예술 분야와 문화산업의 비영리적 실험영역”이라는 정책 대상의 경계가 무너짐
✓ 예술위 설립목적의 본령은 예술창작역량강화사업에 있으나 그 본령이 사라짐

3. 예술위 행정가 및 장르별 현장 전문가 간담회 정리

구분	예술위 행정가	장르별 현장 전문가
예술위 정체성 인식	– 창작사업 및 향유사업 수행처 – 문화부 위탁 사업 수행처로서의 현실 – 독립적 기구로서의 점진적 변화를 기대	– 비영리적 기초예술 지원 기관이 본령 – 변화하는 예술 환경에 맞는 비전 필요 – 광역문화재단과의 관계, 차이점 정립 – 문화부로부터의 독립성 필요
현행 평가제도에 대한 의견	– 정성평가와 계량평가 방식의 균형 필요 – 계량평가 방식이 행정실무 입장에서는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 – 현장평가시 전문가 평가와 향유자(관객) 직접 모니터링 평가 혼용 선호 – 평가지표를 보다 세분화 하여 관리할 필요 있다고 여김	– 정성평가를 절대적으로 선호 – 담론화, 비평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심층기술제 필요 – 전문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과 활동을 긍정적으로 고려함 – 평가지표는 되도록 단순화해야
시민/관객 모니터링 및 평가제도 참여	– 향유지원사업의 경우 수혜당사자 의견 반영이 필요 – 창작산실 경우 전문가 그룹과 관객모니터링 의견 사이의 건강한 긴장관계가 필요	– 평가심의에 시민 또는 관객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은 필요 – 비전문가 평가를 반영하는 것에는 부정적
심의/평가 과정 공개 여부	– 심의/평가 과정 공개에 대하여 경험상 부정적 의견 많음 – 공론화를 거쳐 결정할 필요 있음	– 심의위원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심의과정 및 결과 공개주의 필요
평가제도의 의미	–컨설팅, 멘토링 성격 강화 필요	– 비평과 토론 문화 강화 – 예술위와 예술가의 파트너십 강화 – 예술행정에 현장의 참여 강화
개선 방안	– 평가지표의 세부 마련 등 평가방식과 평가양식을 보완할 필요 있음 – 비평기능 강화되더라도 예술현장의 신뢰 여부는 불투명함	– 비평적 기능 강화 – 평가제도에 대한 인식 변화 – 평가 문화의 변화 필요 – 심의위원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 필요
이의신청제도	– 현행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절차상의 이의제기 제도	– 행정절차 중심이 아닌 예술 내적 기준에 대한 이의제도가 가능한 구조 필요 – 이의제기 제도를 통해 심의/평가 위원과 현장 예술가 사이에 설득과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구조 필요 – 평가자와 예술가 간의 토론 가능 문화 육성 - 예술행정인력이 민원을 관리하는 것이 아닌, 예술계의 당사자 간 조정능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설계되어야
심의/평가위원 구성 방식	– 현행 랜덤 추첨 구성 방식에는 불만족하나 문제의식은 상대적으로 약함 – 사업 성격 따라 차이가 존재함	– 현 심의위원풀 및 심의/평가위원 구성 방식에 매우 부정적 – 무엇보다 전문성, 신뢰성 결여 – 협회 등의 이해관계가 심의위원풀 구성에 개입되고 있음
평가소위원회 구성안(案)	– 소위원회의 권력 집중, 소수 결정권 독점 등 부정적 요소 우려 – 평가관련 비용 증가 등 예산 문제 고려되어야	–신 설에 매우 긍정적임 – 평가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문제를 떠나 문화예술계의 담론화와 비평문화 정착과 창작과정으로의 환류 되는 파생효과가 중요함

□ 사후평가 기반 지원제도에 대한 전문가 제언

- 평가지표는 단순화하고 논술형 정성평가 강화해야
- 평가자의 개별 차이 극복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평가자 상호 공유 필요
- 평가제도는 미학적 논쟁의 장이며 가치투쟁의 장이 되어야, 즉 비평 기능이 강화 되어야
- 실질적 실효적 평가 환류 가능한 제도적 설계 반드시 필요
- 관리 차원의 평가에서 파트너십 강화로 방향 전환
- 전문성 제고, 장르별 소위원회 대폭 강화
- 평가 결과 공유와 토론 문화 정착
- 계량적 공정성 확보가 아니라 성과나 가치에 대한 논쟁 구조로 나아가야 함
- 평가 결과 우수 예술가에 대해서는 수시지원, 기획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 동료 평가 도입 (지원자 상호 토론 제도, 공개 평가제도)
- 성장단계별 지원, 생애주기 지원 제도 도입은 장르별 차이를 고려할 때 재고할 여지 있음. 변화주기가 짧거나 빠른 경우, 특정 세대가 권력화 한 경우, 세대 구분이 불필요한 경우

4. 사후평가제도 제안

1) 개선 방향

- 지원정책 책임기관으로서 현재 예술위의 위상을 상기할 때, 사후평가제도는 위원회 설립초기의 미션과 현재의 방향성에 맞추어 현장과의 소통성, 예술가의 참여 주체성, 상호 합의 가능한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고되어야함
- 예술위의 설립목표와 비전에 부합하는 창작지원 사업을 설계해야 함
- 창작지원을 통한 향유지원 사업이 상호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함
- 중앙기관으로서 광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재단과의 관계 재설정 필요
- 광역문화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개개의 예술지원정책과 중복되지 않는 중앙 기관으로서의 예술위 고유의 지원제도 개발이 필요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등과 같은 국가전반의 예술지원 현황 및 정보를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기반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활용도를 제고해야함

2) 사후평가기반 예술창작지원제도 제안

□ 다년지원의 경우

- 점검1 : 아르코 혁신TF에서 제안한 '(최초)지원제도'의 경우, 다년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부족 및 맞춤형 지원사업 부재를 제안의 근거로 하고 있음. 다만 현재 예술가의 작업방식과 다년간 지원의 형태가 서로 조응하는지 여부를 살펴야함. 더불어 사후평가 시스템 정비를 전제로 지원제도가 설계되어야 함
- 점검2 : 과거, 수월성을 근거로 한 신진이나 중견의 지원이나 또는 '선택과 집중'의 방식으로 수행되었던 다년간 지원사업의 경우, 수혜자의 작업방식에 따른 성과와 환류의 정도가 차이가 있음. 또한 '신진-중견-원로'등 예술가의 생애주기를 고려하거나 세대 특정화를 목적으로 설계된 사업의 경우, 수혜자의 작업방식에 따른 성과와 환류 정도를 예측할 수 없음. 결과적으로 예술가 복지의 성격으로 귀결되어 사후지원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음

- 다년간 지원사업이 유의미한 프로젝트 개념의 지원제도 설계, 작품 중심의 결과물에서 벗어나 다양한 결과물/산출물을 바탕으로 평가하며, 공연예술의 경우 극단, 연출, 작가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예술가가 실험적 작업과 과정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함 (예컨대 리서치 기반의 개인 및 단체 작업, 단계별 결과물(outcome)이 예술계와 공유 가능한 작업, 장기 과제를 통해 국제 혹은 지역교류를 하는 사업 등)
- 연속간행물 발간, 연례 축제, 공간 지원 등 다년/연간 지원 사업의 경우 사후평가 강화, 특히 사후평가가 적극적인 컨설팅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사업의 미래 비전 혹은 출구전략 모색이 가능하도록 함
- 연차별 평가 강화, 사후평가에 따른 지원 중단 등 수혜자 책임성 강화를 바탕으로 한 다년 지원을 늘려 중장기적 관점에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 연차별 사후평가를 강화하여 다년 지원을 늘리고 사후평가에서 부실한 단체는 지원 중단하는 방식을 취해야 함.
- 전 과정에서 공공지원 작업의 과정 및 결과를 예술계 모두가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모색함

□ 수시지원의 경우

- 사후평가를 기반으로 축적된 데이터 및 전문평가단의 미학적 책임에 의거, 예술적 수월성이 탁월한 예술단체의 경우, 수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사후평가를 기반으로 축적된 데이터 및 전문평가단의 미학적 책임에 의거, 시의성이 있다고 평가된 사업의 경우 수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기존의 회계연도 규정에 따르지 않아도 사업 수행을 할수 있는 제도로 설계해야 함

□ 사후평가를 바탕으로 창작-향유 연계

- 창작과 향유를 별개로 지원하는 이원화 정책기조 폐기(지양)

- 창작–향유 사업 연계로 창작 예산 부족과 과도한 향유사업 예산 간 불균형 문제 해결 방안
- 창작지원과 향유지원이 선순환적으로 연계되도록 지원 사업 체계 재설계.
  (예컨대, 1차 우수작품지원 후 2차적으로 향유사업 및 국제교류 사업과 연계, 2회까지 중복지원 가능하도록 하며 2차 지원단계에서는 지원서류 최소화)

□ 창작지원제도의 확대방안 지속적 연구 필요
- 현장 예술가가 참여하는 사후평가기반 지원제도의 기획 및 정책실험
- 사전심의 방식에서 벗어난 사후평가기반의 확대방안에 대한 연구계발
- 광역문화재단과의 연계를 통한 사업 및 정책 구상을 통해 유기적인 관계 확대

3) 사후평가 기반 지원제도를 위한 기반

□ 사후평가관리 DB 구축
- 사후평가의 효과적인 수행 및 사후평가 결과에 대한 지속적 관리 및 점검이 가능한 온라인 사후평가시스템의 필요
- 중앙과 지역의 정보를 구분하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예술 전반의 현장을 폭넓게 바라볼 수 있는 예술지원정보의 데이터베이스 필요
- 광역문화재단의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 및 연동성 강화 필요
- 심의/평가위원 이력관리제 등 평가요소의 정보축적 체계의 필요

□ 사후평가기반사업을 위한 민간책임위원회 제도
- 사후평가제도의 전제조건으로 민간책임위원회의 구성이 필요
- 심의 및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상시적 민간기구로서 활동
- 현장 및 국가기구로부터의 독립성을 갖춘 민간책임위원의 활동이 보장되어야만 사후평가제도의 운영과 이를 기반한 지원제도 설계가 가능
- 민간책임위원회를 바탕으로 한 지원제도가 아르코 혁신TF에서 제안한 “사업기획과 심의과정에 자율적 의지를 가진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는 구조로서 기능해야 할 것

5. 심의제도와 평가제도

1) 문제 진단과 개선 방향

□ 현 심의/평가제도에 대한 문제제기
- 현재 심의/평가 결과에 대한 예술현장의 수용도는 매우 낮음
- 심의/평가위원의 전문성, 심의/평가위원 구성의 합리성, 심의/평가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예술현장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임

- 현재의 심의위원회 구성 방법은 심의위원 후보군에서 신청분야, 세부장르, 기타 고려 사항을 감안하여 각 항목별로 5배수 내외의 위촉대상자를 선별하고, 그 중 감사부 입회하에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해 선발한 후 해당 분야 위원과 협의하여 섭외 순위를 정해 심의유형별로 5~10인을 섭외 위촉함
- 현 심의위원 후보군은 절차적 형식적 투명성만을 강조하여 구성되어 심의위원의 전문성이 간과되어 있음
- 심의위원 후보군의 전문성,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후 절차적 투명성, 절차적 객관성을 기하는 것이 심의위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의문임

-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장르별, 직능별, 세대별, 성별, 지역별 균형에 대한 강조는 심의/평가위원 구성의 전문성, 신뢰성 제고를 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심의위원회 구성의 계량적 균형, 절차적 투명성 강조는 내용적 실질적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아닌 계량적 형식적 객관성에 불과함
- 심의/평가위원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절차의 공정성, 합리성이 확보되어야 함

□ 개선 방향

- 형식적 공정성이 아닌 심의/평가위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한 내용적 공정성을 제고해야 함
- 심의/평가위원의 심의 기준이 명확히 공개되어야 하며 심의/평가위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구조여야 함
- 심의/평가위원의 심의 기준에 대하여 예술현장은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함
- 심의/평가위원과 현장 간의 심의 기준, 미학적 가치 판단 등이 서로 충돌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심의결과에 대한 현장의 이의제기 및 미학적 이견에 대한 논쟁과 토론이 갈등이나 민원이 아닌 소통의 과정으로 인식되도록 심의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토론과 그 과정에서 생산된 담론이 예술정책 및 제도 개선에 환류될 때, 궁극적으로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이룰 수 있음
- 예술현장의 제도적 접근성과 자율적 참여성을 보장하는 방식이 통해 예술지원제도와 현장의 관계를 구축할 때 심의결과의 수용성 및 공정성 제고를 이룰 수 있음

- 심의/평가제도 자체가 예술계의 자율적 거버넌스 형식, 참여형 플랫폼 구조가 되도록 구성되어야 함.
- 예술현장의 제도 접근성 제고, 정책에 대한 자율적 책임적 참여 보장, 윤리적 사회적 책무성 강화 등과 맞물려 수정 보완될 필요가 있음

- 심의/평가의 공정성은 다음을 요건으로 함
  첫째, 심의위원 후보군 구성의 전문성, 신뢰성 강화
  둘째, 심의/평가위원회 구성의 합리성 확보
  셋째, 심의/평가 절차의 객관성 보장
  넷째 심의/평가 위원의 책임성, 윤리성 강화

2) 심의/평가단 구성과 운영

□ 심의/평가위원 후보군의 구성

- 심의/평가위원 후보군은 최근 10년 간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현장예술가 중심으로 구성하여야 함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의 예술가 DB와 각 광역문화재단 심의/평가위원 후보군을 교차 검토하여 심의위원 후보군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장르별, 영역별,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후보군의 분야별 전문성, 평가 가능성 등을 세분하여 관리, 운영하여야 함
  (예) 연극 중 평가가능분야, 예컨대 기초예술창작, 축제, 국제교류, 지역순회사업, 아동청소년 연극, 시민참여사업 등 세부 사업별 전문분야를 세분하여 관리

□ 심의/평가위원회의 구성

- 심의/평가위원회 구성은 후보군의 전문성을 우선적이고 기본적인 바탕으로 하여, 사업별 목표와 내용에 맞는 이들을 중심으로 합리적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심의/평가자 이력관리제를 통하여 심의/평가 활동에 대한 메타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이 차기 심의/평가위원회 구성에 반영되어야 함
- 심의/평가자의 '심의/평가위원으로서의 전문성, 책임성, 윤리성' 평가를 반영하여 심의/평가위원 후보군 및 심의/평가위원회 구성을 운영하여야 하며, 우수한 심의/평가위원회를 관리하는 '우수 심의/평가위원 제도'를 마련함
- 각 장르별 우수 심의/평가위원을 중심으로 독립된 (가칭) 평가관리위원회(소위원회 방식)를 구성 운영함

□ 심의/평가제도

- 심의공개주의 : 심의는 전 과정 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함
- 심의/평가의 책임성 강화 : 심의위원회는 심의의 결과와 기준에 대한 미학적 절차적 책임을 지는 구조이어야 함
- 공개심의 : 일부 사업의 경우는 공개 심의(인터뷰 심의, PT 심의 등)를 실시하여 심의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심의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함
- 정성평가, 서술식 총평 강화 : 심의/평가 결과에 대한 총평은 심의/평가위원회의 미학적, 사회적 가치 기준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방식으로 서술되어야 함

– 이의신청 제도화 : 심의결과 후에는 이의신청 기간을 설정하여 이의신청을 제도적으로 보장함

□ 이의신청 제도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접수 받으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심의위원과 평가관리위원회 책임 하에 타당성 검토를 거쳐 처리함
– 심의위원은 이의신청에서 제기된 심의 결과의 미학적 사회적 가치 기준에 대하여 이의제기자와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하도록 해야 함
– 현재의 이의신청제도인 옴부즈만 제도는 블랙리스트 사태의 여파로 만들어진 제도로서 불공정한 업무처리, 절차적 부당함 등을 조사, 조정하기 위한 제도이며 심의의 가치 기준에 대한 논의 구조는 아님[1)]
– 이의제기와 그 처리의 과정은 갈등과 분쟁 조정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서는 안 되며, 예술현장과 지원제도 및 정책 간의 유기적 관계 맺기, 담론 생산과 정책 참여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함
– 사업 종료 시점에서 공개 평가회 제도화 : 각 공모/지원 사업 종료 후에는 공개평가회(혹은 사업 성과공유회) 개최를 제도화하여 참여예술인들의 사업평가와 토론이 공식화될 수 있도록 함.

□ 정성평가, 질적평가 강화

– 성과지표 중심의 정량평가에서 비평적 서술적 정성평가로 변환이 요구됨
– 현재의 평가지표는 '사업계획 - 사업진행 - 사업성과'를 기준으로 하여 공통 평가지표 및 사업별 지표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사업별 유형별 세부 성과지표를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음
– 예술창작지원사업은 단순한 성과 평가나 결과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는 평가 환류의 비평적 기능이 요구됨
– 사후평가 기반 예술지원 확대를 위하여 제안하는 논술형 정성평가 방식을 모든 사업에 걸쳐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예컨대 향유사업의 경우 성과지표 중심의 평가가 유효할 것으로 보임

□ 심의/평가위원회 사전 사후 교육 강화

– 심의/평가위원회는 사전 회의를 통해 담당 사업의 세부 지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심의/평가위원 간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조율하고, 사업의 목표와 가치 등에 대하여 사전 공유하여야 함
–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심의/평가 기준 마련 : 심의/평가위원은 사전회의를 통해 지표의 세부안이나 배점을 조정할 수 있음
– 사후 현장평가의 경우 사업에 대한 평가 기준 논의 과정과 결과는 현장에 공개되어야 함
– 평가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는 사후 회의를 통하여 활동 사항의 내용을 위원 간 서로 공유하고 메타평가를 실시해야 함

1) 2017년 2월 23일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당시 위원장 박명진)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사과문' 참조.

3) 심의/평가관리위원회 구성과 역할

□ 심의/평가관리위원회의 구성

- 심의/평가위원회 구성의 합리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장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후보군 중 세부 사업 목표별, 분야별 평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의/평가위원회를 구성함
- 심의/평가관리위원회 위원은 활동기간 중 특별한 예외 상황이 없는 한 심의/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음

  예외 상황 : 평가관리위원회 소속 위원 외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가 없는 경우

□ 심의/평가관리위원회의 역할

- 심의/평가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평가위원회 추천, 관리, 메타평가 등을 진행함
- 심의/평가관리위원회는 이의제기가 공식적으로 없다고 하여도 '탈락자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예술인과 제도 설계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토론하여 메타평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심의/평가제도의 공정성, 합리성, 윤리성 제고를 위한 연구와 노력을 지속함

4) 정리

1. 심의/평가 제도는 전과정에 걸쳐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 합리성을 원칙으로 해야 함
2. 심의의 공정성은 첫째, 심의위원 후보군 구성의 전문성 강화, 둘째, 심의/평가위원회 구성의 합리성 확보, 셋째, 심의/평가 절차의 객관성 보장, 넷째 심의/평가 위원의 책임성, 윤리성 강화를 통해 확보되는 것임
3. 심의 결과에 대한 불복이나 이의제기는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함. 이 과정을 민원 관리나 갈등의 차원에서 접근하여서는 안 됨. 현장과 제도 간의 소통의 과정으로 접근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의 토론과 담론 생산이 이후 정책 및 제도로 환류 되어야 함
4. 심의/평가 제도의 연계를 통한 심의위원 및 평가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함. 심의/평가 과정의 공개주의 원칙, 심의/평가자 이력제 실시, 심의/평가의 전 과정에서의 책임성 강화 등을 제도화해야 함. 이를 통하여 심의/평가 위원의 전문성, 책임성, 윤리성을 제고해야 함
5. 심의/평가 제도의 전 과정에 걸쳐 현장과 소통하고 비평 기능이 강화될 때, 지원제도의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이 확보됨
6. 정책, 제도, 심의, 지원금 수행, 평가 등의 전 과정에서 예술현장의 적극적 주체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주요혁신의제,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3.
지역문화예술지원 거버넌스

염신규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

지역문화정책 거버넌스 개선과제와 방안

염신규

(사)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
인천대학교 문화대학원 겸임교수

2018.12.21

지역문화정책 거버넌스 개선과제와 방안



CONTENTS

1. 지역문화정책 거버넌스의 배경과 필요성
2. 지역문화정책 관련 법률적 근거
3. 지역문화정책 환경의 변화
4. 지역문화정책 관련 지원 조직
   - 중앙
   - 지역
5. 지역문화정책 추진 체계
6. 지역문화정책 지원방식(예산)
7. 지역문화정책 전달의 흐름
8. ARKO의 지역문화 관련 사업
9. 해외의 지역문화정책 거버넌스 사례
10. 지역문화거버넌스 체계의 문제점
11. 문화정책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주요 이슈
12. 시사점
   - 문화정책 거버넌스 개선의 방향
   - 거버넌스 체계 안에서 ARKO의 변화 방향

국가 주도로 성장해 온 한국의 문화예술정책

- 한국의 문화예술정책은 1973년 문화예술진흥법(법, 제도) - 문화예술진흥기금(재원) - 문예진흥원(집행기구, 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하 ARKO)의 시스템이 구성된 이후 본질적 차원에서 프레임이나 논리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했음
- 문화예술진흥법 상의 문예지원의 근거가 갖고 있는 국가 중심의 문화예술인식(*"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 → 국가주의 & 성장주의

→ **진흥에서 분권과 자치 중심으로의 전환 필요성 제기**

단계별	정책관점	지역을 바라보는 시각	중요 개선과제	주요사업
1단계	진흥 관점	중앙정부 주도로 서울과 같은 수준으로 문화진흥이 필요한 곳	문화격차	문화시설건립 예술창작지원
2단계	문화분권 관점	중앙의 문화정책을 상호협력을 통해 구현하는 파트너	전달체계	문화복지사업 (지역순회, 바우처)
3단계	문화자치 관점	고유한 문화자원이 존재하는 곳 문화민주주의가 구현될 삶의 터전	문화참여	문화예술교육 생활문화지원

출처: 류정아 외(2012). <지역문화 정책 분석 및 발전방안> 내용 종합 및 재정리

지역문화 정책 체계와 유관한 관련 법률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률(문화다양성법) 외

문화기본법

- 문화기본법은 문화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여 문화 관련 법률에 통일성을 부여할 필요성에 따라 문화 관련 법 전체를 아우르는 일종의 모법(母法)기능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자치단체)에 대한 문화정책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
- 문화기본법은 5조에서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음과 같이 명시

균형 : (제5조 2항) 국가는 지자체의 문화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를 통해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향유의 확대 : (제5조 3항) 국가와 지자체는 경제적 · 사회적 · 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

문화영향평가 : (제5조 4항)국가와 지자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

문화예술진흥법

-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문화예술진흥법 내용의 일부가 개정·시행(2014년 7월 29일)되었는데, 이에 따라 지방문화예술위원회, 문화지구의 지정·관리,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항이 정비
- 지역의 문화예술 공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지역문화진흥법이 토대가 되고 있음

지역문화진흥법

- 2000년대 초반부터 민간의 문화예술계로부터 지역문화 발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중앙정부 역시 지역문화의 자생적 발전구조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함.(2001년 "지역문화의 해" 선포)
- 200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추진위" 결성. 17대, 18대 국회를 거쳐 2013년 12월, 법률 제정 필요성이 제기된 지 10여년 만에 "지역문화진흥법"이 7개의 장, 24개조의 조항으로 된 제정안이 국회 통과
- 법의 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진흥의 기본원칙(제3조)에 근거한 책무(제4조)를 지게 되었으며,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제6조), 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지원과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등의 사업(제8조, 제9조)을 할 수 있게 되었음
- 또한, 지역문화전문인력을 양성(제10조)하고, 지역문화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제11조), 문화도시와 문화지구를 지정·관리할 수 있게(제16조~18조) 되었음.
- 제19조와 제20조에서는 지역문화진흥기관(지역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운영의 법적, 제도적, 사업적 근거를 제공
-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은 지역문화시설, 인력, 제도, 법률적 강제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나, 지역문화진흥체계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적 변화라 할 것임.

[문화비전2030] -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는 「문화비전 2030」을 통해 요약됨
- 문화비전2030은 3대가치로서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설정함. 이 가치들은 국민의 문화적권리에서 출발하는 「문화기본법」에 기초한 핵심가치로, 이전 정부 문화비전에서 다루지 않거나 소홀히 했던 '가치'의 내용과 방향을 실질적으로 담아낸 부분이 문화비전2030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이며 이 3대 방향에 맞춰 발굴한 8대 정책의제를 제안함
- 이중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의 주요과제로 "지역문화분권 실현"을 제시하여 향후 문화정책을 지역분권과 자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명시적으로 선언함



[문화비전2030]의 과제 / [사회예술정책(2018-2022)]의 과제

구분	대표과제
지역 문화의 고유성 유지, 발전	• 문화도시 조성: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지원
지역내 문화자치 역량을 위한 기반 조성	• 지역의 문화인력 양성, 활동 지원 - 인력양성 전문기관 지정·지원, 문화청년 일만시간 지원 프로젝트 추진 • 지역 문화기관 위상과 역할 재정립 - 지역문화재단 운영의 투명성, 전문성, 독립성, 자율성 강화 • 문화기관의 특성을 인정하는 출자, 출연기관 운영 및 평가 개선 • 지역문화진흥관련 정책수립, 집행을 위한 문화정책 전담기관 및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지정 활성화 • 지역문화진흥 재원의 지속적 확충 - 지역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본재원으로서 '지역문화진흥기금 ' 설치 의무화 및 운영 지원 (포괄보조금 등 기금 조성 및 운용을 위한 재원대책 적극 강구) • 지역문화 정보체계 구축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체계 마련 및 계기 제공	• 지역 주민사업체 창업 활성화 지원 • 지역문화진흥법에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주민참여 문화예산 제도 지원
중앙과 지방 간 협치 모델 설계	• 예술위원회, 예술지원기구, 광역·기초문화재단, 지방문화원, 한국문화원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력체계 구축 • 광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기초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 기반 마련
협치체계 구축 및 법제 정비	• 민-관 협치에 기반한 정책 협력 체계 구축 - (가칭)예술정책협의체: 문체부-예술지원기관(예술위 등)-예술계-학계-지역대표 등 참여, 주요정책 의견수렴 - (가칭)예술지원협의체: 예술위 중심의 기금배분 및 주요사업 추진 협력체계로 예술위-예술지원기관·단체-예술현장-지역문화재단 등 참여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현장 밀착형 운영기반 구축 - 장르별, 분야별 정책협의체 활성화: 문학진흥정책위원회,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 공연예술협의체 등 • 지역분권 및 자율성 제고 - 지역 예술지원기관 확대 네트워크 구축 -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추진 체계화 - 예술인 복지정책 지역 협력체계 구축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새문화정책준비단(2018). 문화비전2030, 사람이 있는 문화

주무부처 내의 조직 개편 및 위상 강화

- 정부 출범 이후 지역문화에 대한 위상 강화를 위해 지역문화에 대한 소관업무를 확대하여 지역전통문화과에서 지역문화정책관(실국 단위)으로 승격
- 문체부는 2015년에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설치하여 지역문화 진흥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자문, 지역 문화기관 간 연계 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있음(2018.3 2기 출범)



중앙

ARKO

문예진흥법에 따른 예술지원, 문화향유 사업을 통한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 별도 분석)

주요 기관	사업 영역
지역문화진흥원	생활문화센터, 생활문화동호회, 생활문화공동체, 지역문화인력지원,문화이모작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한국문화원연합회	어르신 문화나눔, 향토문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방방곡곡 문화공감, 예술감상교육(꿈다락 문화학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지원
기타	영진위, 한국콘텐츠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인복지재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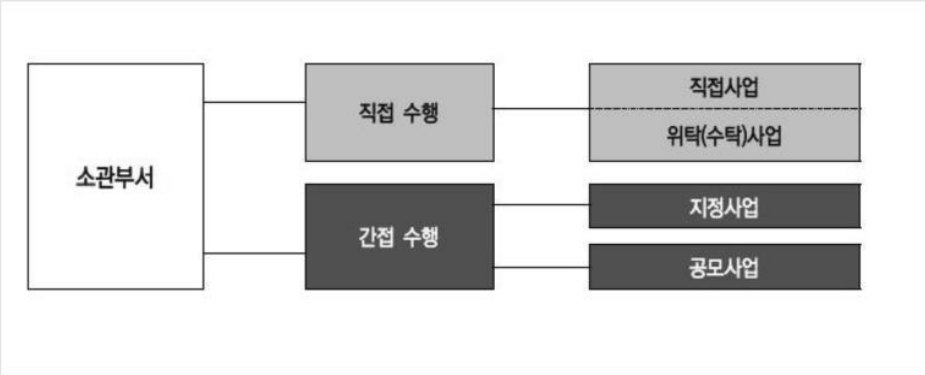
4. 지역문화정책 관련 지원 조직

지역

주요 기관	사업 영역
광역.기초문화재단	예술가 지원, 문화향유 지원, 문화지구 및 문화도시 사업, 문화정책 개발
지방문화원	향토문화 개발 보존 등
문화예술회관 / 공공박물관, 미술관	공연을 중심으로 한 지역문화 향유 사업, 지역 문화 자원 아카이빙, 지역 작가 지원 등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도서를 중심으로 한 문화향유 및 문화예술교육
문화복지시설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등에서의 문화복지 및 문화예술교육활동
생활문화시설	생활문화센터, 지역서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마을예술창작소(서울) 등 다양한 생활문화시설

5. 지역문화정책 추진체계

- 지역문화정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앙정부로서 사업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실행은 지역에서 수행하는 것이 보편적
- 사업의 수행에 있어 정책을 개발 또는 일시적 사업 등의 특수성이 있을 경우 소관부서에서 사업을 직접 주관
- 이러한 직접 수행을 할지라도 실질적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별도의 전문성과 인력이 요구되기에 위탁(수탁) 방식에 의한 진행



출처: 조광호(2016). 지역문화정책사업 추진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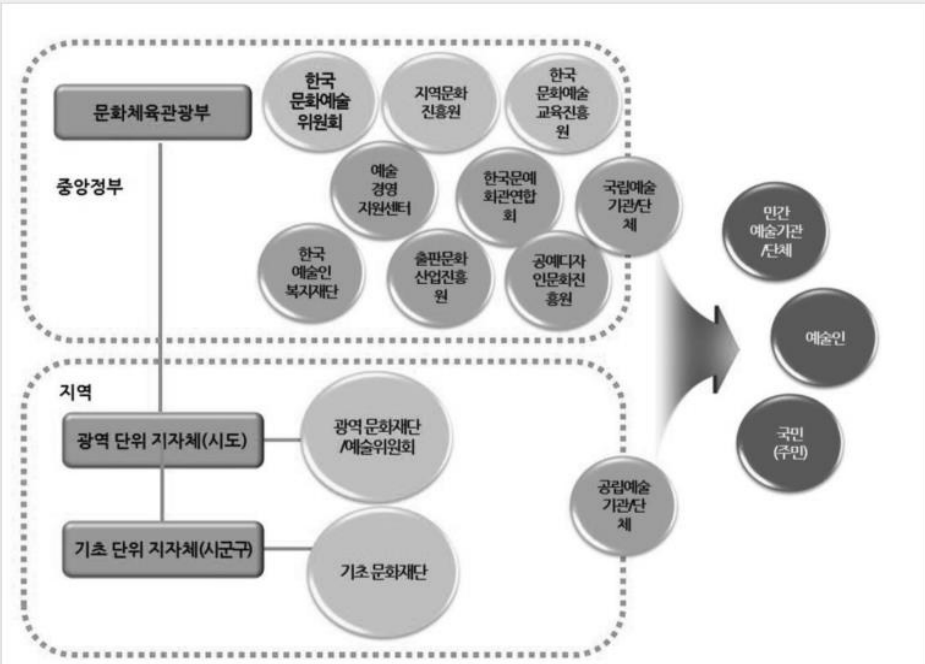
예산

- 지역문화 정책사업의 지원은 **국고보조금에 의한 예산지원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과 함께 전문가(또는 단체)에 의한 컨설팅지원 및 평가지원이 이루어짐
- (2016년 기준)예산지원 방식에 있어 문체부의 국고보조사업은 **지자체보조사업**은 172개 사업, 약 1조 6822억원(재정총계대비 **30.6%**)으로 **민간보조사업**은 640개 사업, 약 2조 299억원(재정총계대비**36.9%**) 이었으며, 문체부 2016년도 예산의 약 3조 711억원, **67.5%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편성되어 추진
- 국고보조금 지원에 있어 사업의 **추진방식은 지정사업 및 공모방식**이 대표적
- 문체부 교부대상에 따른 예산편성에 따르면 특정사업을 제외하고 다수의 사업이 공모방식에 의해 사업 추진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사업 수	2016년 재정	재정총계대비 보조금 비율	비 고
문체부 재정 총계		812	5,494,795	100.0%	
지자체 보조	합 계	172	1,682,214	30.6%	
	지정사업	124	1,376,947	25.1%	
	공모사업	48	305,267	0.0%	
민간 보조	합 계	640	2,029,859	36.9%	
	지정사업	401	1,359,720	24.7%	
	공모사업	239	670,139	12.2%	

출처: 조광호(2016). 지역문화정책사업 예산 체계



출처: 양혜원(2018). 지역분권 관점에서의 주요국가 예술지원정책 분석 연구

ARKO의 사업 카테고리

예술창작지원	예술인력육성	국제예술교류지원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
지역문화예술지원	공연예술활용관광자원화	문화예술사회적인식제고	

- 지역문화예술지원의 카테고리 안에 지역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이 담겨져 있으나 여타 카테고리 안에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이 산재**해 있음. 특히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 공연예술활용관광자원화 등은 대부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임.
- 지역문화예술지원은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지자체 공연예술활동지원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가 2014년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과 공연장상주단체 특성화 지원으로 통폐합. 이 밖에 한지협(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을 중심으로 한 지역문화협의체 운영과 외부용역으로 이뤄지는 사업평가 등이 있음

문예진흥기금 사업 중 지역문화예술지원 관련 사업 (양혜원, 2018)

-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은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예술 창작활동 지원을 통한 중앙과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
- 2016년 예산은 248억원에 달했으나, 2017년부터 동 사업 내 일부인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지원사업’이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이관. 이에 따라 2017년과 2018년 예산은 약 74억원으로 축소
- 2018년도 사업은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71억원)’과 ‘지역문화협의체 지원 및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운영 및평가(2.7억원)’

	목적 및 내용	특징
지역문화예술지원 (2018년: 74억원)	•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각종 문화 예술 활동 지원을 통한 중앙과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 달성 • 지역 예술가9단체)의 기초 창작·발표 활동, 공연장과 공연단체 협력관계에 의한 지역 공연장 활성화, 공연단체 창작 여건 개선 및 창작역량강화	• 사업기간 : 1998~계속(단년도) • 사업규모 : 전국 지자체별 예술지원사업 71억원 지원 • 시행방법 : 직접수행 및 자치단체경상보조(50~70%), 민간경상보조(정액지원) • 사업시행주체 : 17개 광역 시도, 문화재단, • 공연장,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 대상 : 지역 예술인, 예술단체, 공연장

ARKO의 지역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구조

-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한지협)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음
- 설치목적 : 중앙과 지역, 지역 상호 간 문화지원 기구 네트워크 허브로서 효율·효과적인 지역문화 정책 구현에 기여
- 회원구성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광역시·도 및 14개 재단법인(별도 가입 절차에 따름)
- 주요사업 : 지역 간 기금배분 및 사업개선 등 정책협력위원회를 통한 조정·협의 / 지역별 특화사업 발굴 및 공유, 평가결과 컨설팅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개최/ 지역문화행정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 지역문화예술 이슈 발굴 및 해결을 위한 토론회, 포럼, 워크숍 추진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수행 /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업무 수행(*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체평가 위탁)
- 한계 : 정책수단(예산, 사업)의 부족, 여타 중앙 문화예술지원기구들과의 연계성 미비

출처: http://arkonet.tistory.com/266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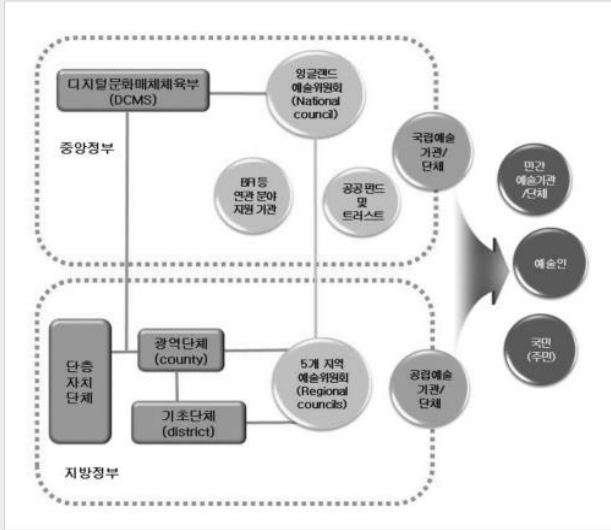
ARKO의 지역 관련 사업의 문제점

- **아르코 사업 구조 전반의 문제점(비체계적, 산발적, 목적의식 부재)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지원 사업의 비체계성(개별 사업만 있지 연계 협력에 대한 고려가 없으며 나열식)의 개선은?**
- **문화예술지원구조의 지역관점의 부재 : ARKO에서 지역문화예술지원이 하나의 분과 체계로 존재하는 것이 맞을까? 사업 구조 전반에서 지역에 대한 관점과 이에 따른 사업 재구조화는 불가능한가?**
- **여타 카테고리 로 흩어져 있는 지역 관련 사업의 연계성을 만들 수 없는가?**
- **지역문화협력네트워크구조의 실질적 활성화는?**

영국 (연방형 국가)

광역, 기초 역할

- 중앙정부 : 국가를 대표하는 창작물 지원(수월성과 접근성)
- 지역정부: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험 지원
  (문화예술접근성 제고, 지역커뮤니티 기반 예술지원사업)
- 광역: 기초단체간 균형발전 및 브랜딩 작업에 집중
- 기초: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향유사업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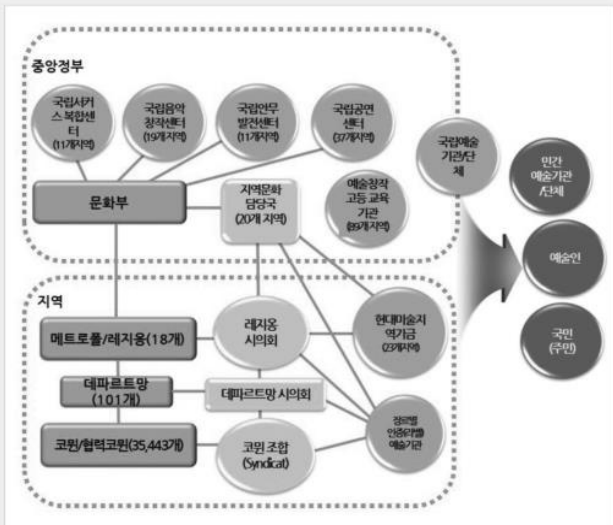
시사점

- 지역분권 흐름의 강화와 기초단체 지향의 정책 추진
- 중앙-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간 합리적 역할 분담
- 지자체의 문화 전략/비전 수립에서 협업생산 모델의부상
- 예술위원회 중심의 명확하고 단순한 예술지원 정책 구조화
- 지역문화정책협의체의 실질적 역할과 활동
- 지자체 예술지원예산의 삭감과 예술위원회(ACE) 재원의 중요성 부각

프랑스 (중앙집권형 국가)

광역, 기초 역할

- **중앙정부: 예술창작 지원, 문화접근성 제고 및 문화예술교육, 국립문화기반시설 운영에 중점. 문화협정제도 등을 통해 지역의 부족한 문화재정 지원(DRAC 예산 37%)**
- 광역 : 레지옹은 문화 분야 기반조성을 위한 공공투자, 예술표현과 문화활동 지원에 중점
- 준광역: 데빠르트망은 고문서 아카이브와 농촌유산 보호 등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에 중점
- 기초: 꼬뮌은 예술창작 지원, 문화예술교육 및 문화활동지원, 문화유산,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지원,등에 중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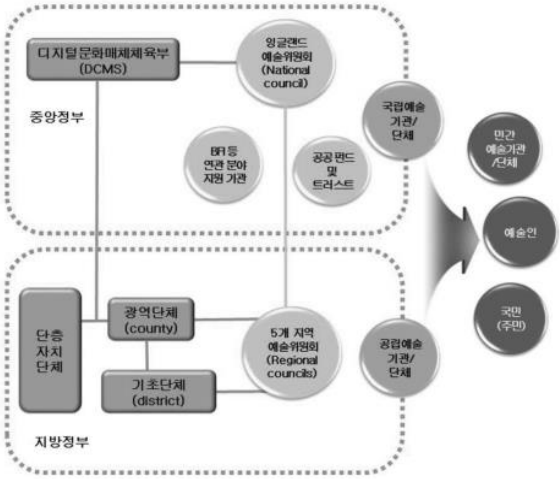
시사점

-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문화권역의 재편: 레지옹 통합으로 문화권역 확대, 꼬뮌의 역할 강화, **협력 꼬뮌 EPCC를통한 문화 프로그램 공유와 문화시설 공동사용 협력체계 구축**, FRAC 등 범지역차원 장르지원 기구화
- 지역의회의 역할 강화 및 지역문화담당국(DRAC)의 중재자적 역할 강조
- **문화협정 등을 통한 중앙-지역 간 수평적 협력관계의 강화, 지역에 자율과 책임부여를 통한 지역의 자치 역량 강화**
- 평가를 통한 지역 예술지원정책의 관리

미국 (민간주도형)

광역, 기초 역할

- 연방정부(NEA) : 예술창작지원, 예술향유 및 참여 지원(특히 소외계층 대상), 주 및 지역정부와의 파트너십, 연구지원,
- 연방정부 - 광역예술기구 - 주 예술위원회 - 지역예술진흥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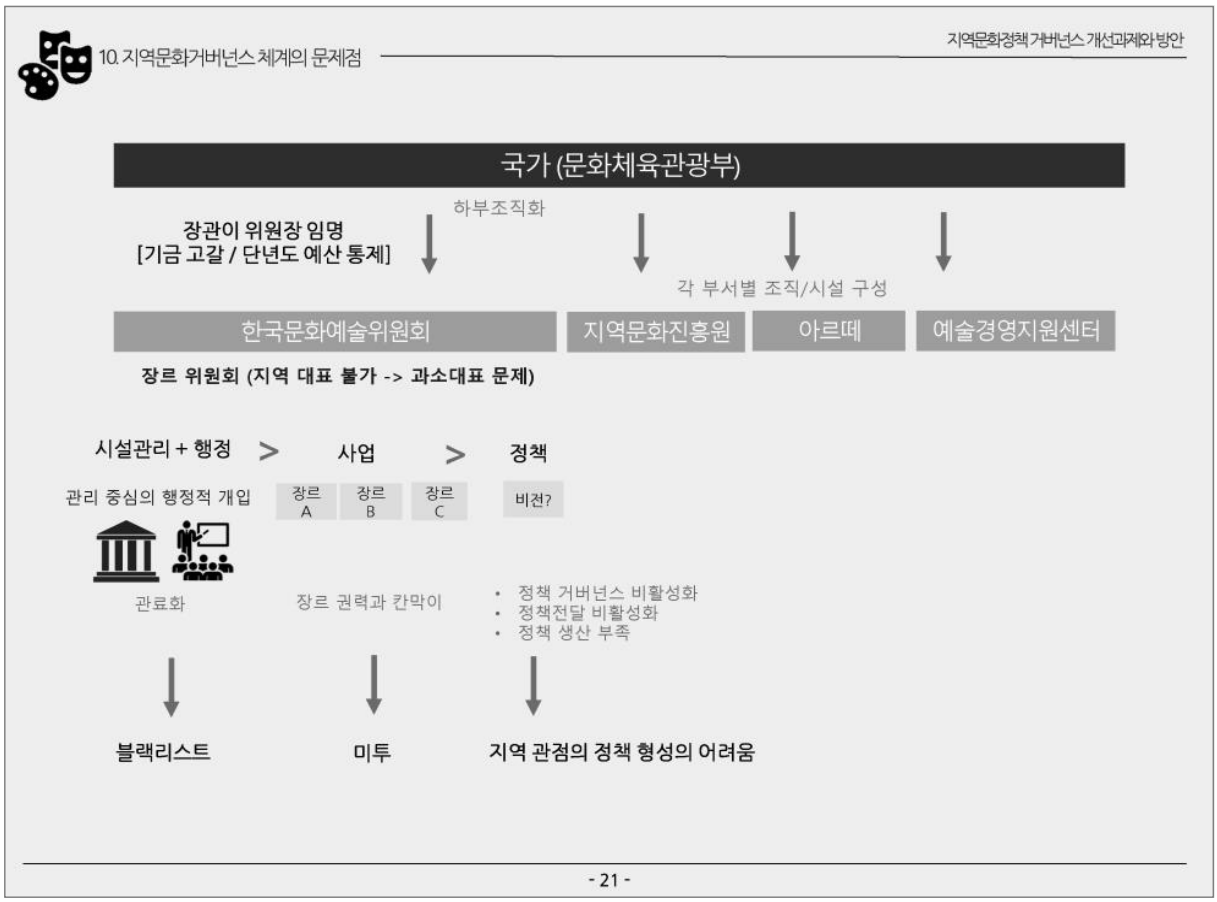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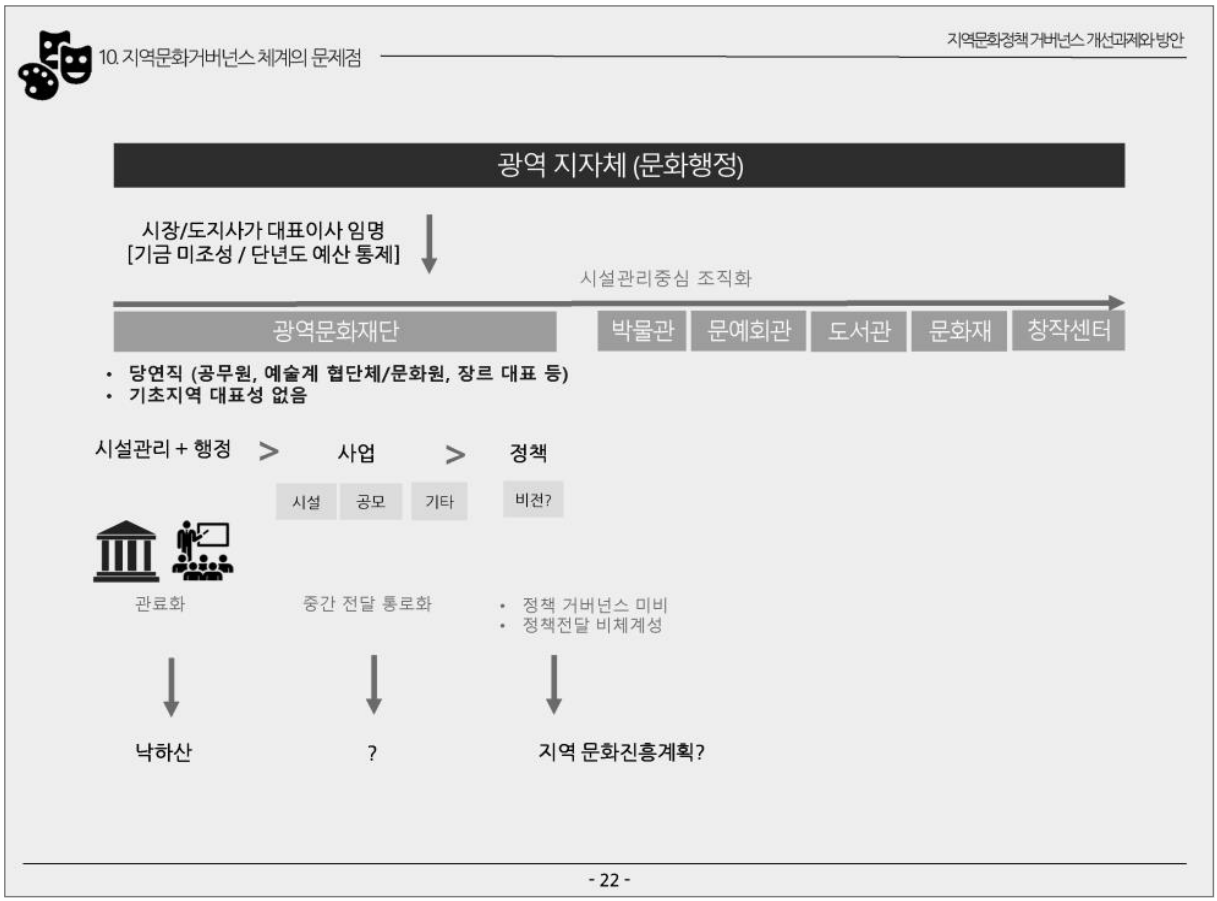
시사점

- <u>국립예술기금(NEA) 예산의 40%를 지역 파트너십을 위해 사용하도록 의무화</u> : 지역의 자율성 보장 및 NEA의 선도적 역할 유지
- 국립예술기금(NEA) - 광역예술기구(RAOs) - 주 예술위원회(SAAs) - 지역 예술진흥기관으로 이어지는 협력적 구조의 형성
- <u>지역정부의 독자적·혁신적 문화예술 정책</u>

시사점

- 지역분권 흐름 강화 및 기초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강조
- 지자체간 연합 및 협력체의 역할 강화
-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한 지역의 자율성 및 공공서비스의 책임성 확보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광역과 기초 간의 역할 배분
- 예술지원기관 구성에 있어 지역대표성의 반영
- 중앙정부와 지역문화정책협의체와의 수평적 파트너십


10. 지역문화거버넌스 체계의 문제점
지역문화정책 거버넌스 개선과제와 방안
국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원장 임명
[기금 고갈 / 단년도 예산 통제]
하부조직화
각 부서별 조직/시설 구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진흥원
아르떼
예술경영지원센터
장르 위원회 (지역 대표 불가 -> 과소대표 문제)
시설관리 + 행정 > 사업 > 정책
관리 중심의 행정적 개입
장르 A
장르 B
장르 C
비전?
관료화
장르 권력과 칸막이
• 정책 거버넌스 비활성화
• 정책전달 비활성화
• 정책 생산 부족
블랙리스트
미투
지역 관점의 정책 형성의 어려움
- 21 -


10. 지역문화거버넌스 체계의 문제점
지역문화정책 거버넌스 개선과제와 방안
광역 지자체 (문화행정)
시장/도지사가 대표이사 임명
[기금 미조성 / 단년도 예산 통제]
시설관리중심 조직화
광역문화재단
박물관
문예회관
도서관
문화재
창작센터
• 당연직 (공무원, 예술계 협단체/문화원, 장르 대표 등)
• 기초지역 대표성 없음
시설관리 + 행정 > 사업 > 정책
시설
공모
기타
비전?
관료화
중간 전달 통로화
• 정책 거버넌스 미비
• 정책전달 비체계성
낙하산
?
지역 문화진흥계획?
- 22 -

10. 지역문화거버넌스 체계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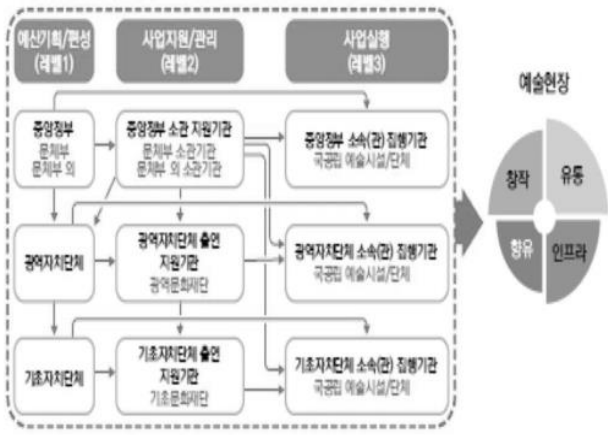


10. 지역문화거버넌스 체계의 문제점

예술정책전달체계의 난맥상 (이규석, 2018)

- 예술정책의 양적 확대와 맞물려 예술행정 전달체계의 비대화·복잡화
- 최상위 전달체계에서 예산 배분 및 정책·사업 가이드라인 결정권한 독점, 중간 및 하위전달체계로 갈수록 사업·예산 의존성 심화
  → 기관 및 제도의 자율성, 독립성 왜곡
- 소결 : 국가(문체부)-지원기구-광역-기초로 내려갈수록 지원구조의 복잡성이 심각해지면서 행정의 비대, 현장접근성이 떨어지는 현상이 심화됨

공공부문 문화예술 지원 전달흐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4) 공공·민간 예술지원 실태조사

1

10. 지역문화거버넌스 체계의 문제점

지역문화정책 거버넌스 개선과제와 방안

문화정책 거버넌스의 장애요인

- 관 주도의 문화행정체계 지속
- 행정부서의 하부 기관화
- 예산의 불안정성/비지속성
- 관료 통제 방식의 지속
- 자치분권형 정책개발기능의 부재
- 정책생산 및 전달체계가 부족과 일방통행 구조
- 지역 대표성 미비

1

- 25 -

11. 문화정책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주요이슈

지역문화정책 거버넌스 개선과제와 방안

중앙정부	지역	시스템	예산	인력
• 정책기능의독점 • 세부단위사업중심 • 공모방식의예술지원정책고착화	• 중앙의존도심화 및자율성약화 • 다양성부재	중앙-지역간,지역간,지역내협력적문화거버넌스구조취약, 문화예술전달체계의복잡성과협력적소통구조의부재로문화서비스의 효율성및효과성저하	지역별예술창작활동을지원해오던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160억규모)의재원을 2017년부터지역발전특별회계로전환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배치체계 취약

'특별회계'의 재원 특성상 예산 확보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지자체의 정책결정에 따라 예산 배정의 우선 순위가 임의적으로 운영될 위험도 있고 지역별 예술창작지원 재정 확보의 편차 및 불안정성 우려

- 26 -

12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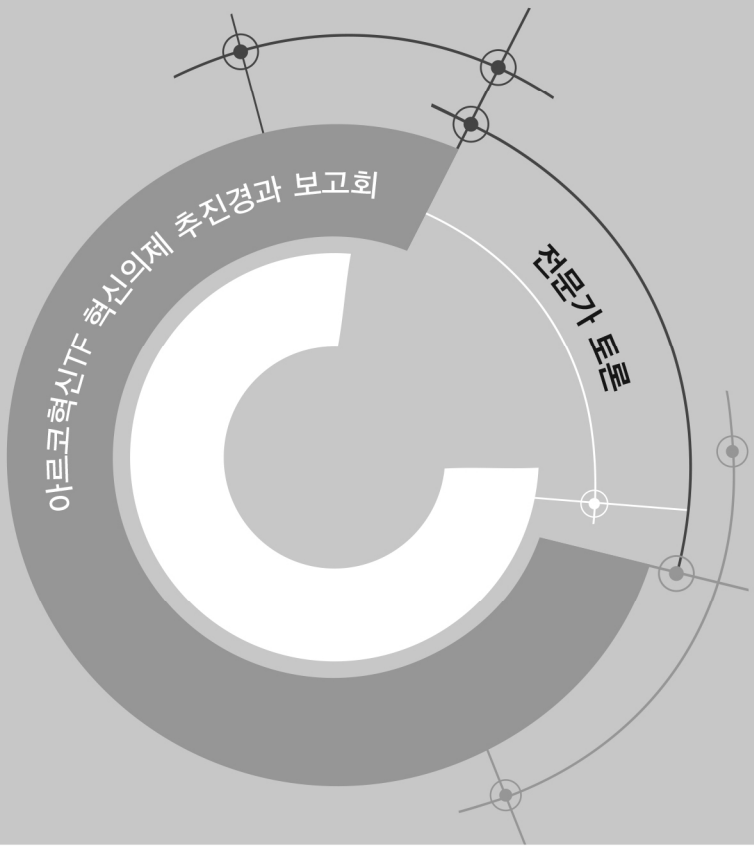
문화정책 거버넌스 개선의 방향

문화예술지원구조 관점의변화	중앙정책단위의 횡적연계강화	지역에서의 문화정책체계구축	포괄보조금 방식의부분적도입	인력
문화예술지원이라는 이분법을벗어나 지역분권관점으로 예술지원문화향유사업 체계를재구성	주무부처지원기관, 상하위전달체계간 사업예산등의상시적 정책협의채널마련	광역및기초단위의 정책협력체계구축 지원필요	세부단위사업별이 예술창작지원,문화예술교육, 향유지원등 카테고리별포괄보조금으로 문체부문화예술예산의일부 (30-40%)를내려보내는형태 변화필요	지역문화인력육성, 지역문화정책연구등 정책거버넌스의기반 조성필요

12 시사점

거버넌스 체계 안에서 ARKO의 변화 방향

ARKO 역할의조정	• 민간중심자율기구로서의제도적위상확보 • 문화예술정책 허브로서의 위원회 기능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예지원정책기구들과의 실질적 협력 및 역할 조정이 가능한위원회구조로 전환 • 지역주체와의정책협력구조강화 : 지역문화거버넌스의실질화를위한 정책네트워크기능의강화
역할조정을 위한 과제	• 위상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 지역거버넌스를 위한 정책 수단의 확보(행정적 자율성, 예산 등) • 지역 관련 사업의 통합 및 재조정 • 지역문화진흥원과의 관계 설정 • 지역(광역 단위) 정책네트워크 구축 • 지역대표성의 확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김상철 (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
김미도 (서울과학기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황해순 (전 부산문화재단 예술진흥본부장)
박신의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
김정수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아르코 독립, 어디서 어떻게 할까?

김상철(前 아르코혁신TF 위원, 현장소통소위원회 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독립성은 예술현장의 독립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다. 예술기구의 독립성은 국가와 예술인의 자율적 관계를 위한 수단이다. 지난 6월 아르코혁신TF가 요청한 혁신안에서 ‘조직혁신의 과제’를 앞세운 것은, 그리고 조직혁신의 과제 첫째, 둘째, 셋째 요구[1]가 아르코라는 예술기구의 제도적 독립성 요구로 채워진 것은 블랙리스트가 작동한 예술행정에 대한 진단에 따른 것이었다.

발제 자료에 앞서서 아르코혁신TF에서 해당 사항을 다룰 당시의 문제의식을 되새긴다. 아르코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기준으로 77건에 대한 사건의 당사자였다. 그리고 이 중 특히 문제가 된 것들은 대개 심사과정에서의 다양한 배제로 이루어졌는데, 많은 경우 문화부의 기관 통제에 의한 것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와 같은 장르별 문화부 사업체계가 그대로 아르코의 기관분장 구조에도 적용되면서 사실상 문화부가 비공식적인 지배개입을 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블랙리스트의 재발 방지라는 최소한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독립이 우선일 수 밖에 없었다. 국가예술위원회라는 구상은 그것의 현실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블랙리스트가 작동하는 예술기구에서 그나마 문화관료들의 지배개입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운법〉 배제라는 방식으로 또 하나의 방안을 잇따라 제시한 것은 타협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절심함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제를 점검한다는 것은 정부가, 아르코가 이런 절심함에 응답할 준비가 되었는가를 되묻는 것이다. 발표자료에 대한 개괄적인 의견에 이어 혁신안의 내용을 현실화하기 위한 제안을 담는다.

1. 발표자료에 대해

제공된 발표자료는 이상의 3가지 사항에 대해 각 항목별로 선택 대안들을 복수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을 개조식으로 밝힌다.

1) 첫째는 국가예술위원회로의 확대개편 둘째는 예술위의 ‘공운법’ 제외, 셋째는 위원장의 호선제 도입이었다.

- **예술기구에 걸 맞는 협치 구조** : 전략방향을 구성하면서 공급자/수요자의 대립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공급자와 수요자의 분리가 아니라 통합이며 사실상 협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아르코는 단순히 서비스 공급기관이 되어선 안된다. 문화기구가 사실은 가장 거버넌스가 취약하다는 역설은 사실 지원심의기구로서 기구의 역할이 과도하게 강조된 결과다. 심의의 공정성을 예술현장과의 거리두기로 달성한다는 모순적인 태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 **목표적/전략적 로드맵의 구성** : 국가예술위 설립, 예술위 기관 유형 변경, 자율경영협약 체결은 각각 정도나 수준에 따른 취사선택의 대상이 아니다. 이를테면, 국가예술위를 설립하더라도 자율경영협약과는 다른 '국가협약'이 필요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예술위 기관 유형을 변경하더라도 협약은 필요하고, 중장기적인 과제로 국가예술위원회의 추진이 진행될 수 있다. 즉, 각각은 복합적인 전략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행정위원회 VS 중앙행정기관위원회** : 기구의 성격으로 보면 행정위원회의 기능에 눈이 가지만 (1) 현재 설치된 행정위원회가 특정한 독립적 결정/심의를 하는 기구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 (2) 예술위처럼 별도의 기금을 가지고 있는 기구가 없다는 점 에 비춰 보면 방송위원회와 같은 중앙행정기관위원회가 더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다.

- **공운법에서의 완전 배제** : 사실 위원회의 위상을 행정위원회나 중앙행정기관위원회로 한다고 하면, 사실상 공운법 상의 배제로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협약 체결**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보면 협약의 수준은 자연스럽게, 위상으로는 정부와 예술위원회 간의 협약이어야 하고 이에 대한 실무협약 파트너가 문화부여야 한다. 여기엔 현재 논의되는 것과 같이 예술위의 일방적인 준수 사항을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문화부를 필두로 하는 정부가 예술위원회에 약속해야 하는 상호적인 의무가 나열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복권기금이나 체육/관광기금의 전출 비율과 같은 사항 등이 협약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현재 제시된 협약의 내용이면 사실상 문화부에 의한 지배관리 기구인데, 역설적으로 앞서의 기관독립에 대한 사항이 불필요해진다.

2. 혁신안 다음을 위해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제안을 해보자. 여기서 현실적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수적인 최소한의 요건을 의미한다.

(1) 문화부–예술위 공정협약 : 불간섭의 원칙, 재원 배분에 대한 기준 등

제안하는 자율경영협약은 공정협약으로 바꿔 체결해야 한다. 영국의 예술위원회와 한국의 예술위원회는 재원 구조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또한 지배 구조의 측면에서도 다르다. 그런 면에서 영국의 협약 구조를 참조하더라도 협약은 '양자 협약'의 구조를 가져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예술위의 지원정책 일반원칙을 명시하고 다른 한편으로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예술위가 다양한 문화예술현장과의 거버넌스를 약속하고 문화부는 이런 예술현장과의 직접 소통을 지원하고 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협약에 담아야 한다.

(2) 공운법 개정 및 국가예술위원회 설립법안: 국가예술위원회로 전환하더라도 우선 공운법의 배제가 필요

공운법 배제는 필수적인 조건이고 가장 시급하게 고려해야 하는 방향이다. 그와 동시에 한국문화예술이원회 독립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면 한다. 실제로 기관 위상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공운법 상의 배제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양자는 선택형이 아니라 병행해서 추진해야 할 일이다.

이상의 내용들을 관철하기 위한 아르코 및 예술현장 간의 공동논의가 필요하다. 블랙리스트 이후 문화행정에 대한 의구심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예술위원회가 기관 자체의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체의 힘만으로는 관철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현장과 더욱 긴밀하게 협의해야 하고 공동의 과제들을 만들어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예술위원회가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데 역할을 했는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장르별 안배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재 예술위원회 위원 구성은 예술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연극제의 논란이나, 공연장의 안타까운 스탭의 사망사고 같은 것에 대해 예술위원회의 입장은 어디에 있는가. 예술위원회의 회의록과 결정사항은 현장예술인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공개되고 있는가. 각각의 회의자료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결정이 되었나. 소위원회는 정말 현장과 긴밀하게 연결하여 구성되고 있는가.

혁신안의 조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필요한 것은 예술위 자체의 내부 혁신이다. 이 문제를 우회하지 말자. 그리고 다시 예술현장에서 시작하는 예술위원회의 논의를 시작하자. [끝]

‘사후평가를 통한 문화예술 지원체계 개선’에 대하여

김미도 (연극평론가)

‘아르코 혁신 TF’에서 제안했던 의제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근본적인 개선은 언제?

이진아 선생님께서는 발표 첫머리에 연구과제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아르코 혁신 TF’의 혁신안 중 사후 평가 관련 혁신 의제를 구체화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와 관련하여 현재의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이라고 전제되었습니다. 제가 아르코 혁신TF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제안했던 의제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는 평가제도에 관련한 문제들에 집중되어 있고, 지원사업 개선에 대해서는 평가제도와 관련된 범위 안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술위의 지원사업 체계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폭적인 개혁안에 대한 연구는 따로 진행되지 않았는지요?

주지하다시피 블랙리스트 실행에 의해 예술위의 사업들은 대거 ‘기획사업’으로 탈바꿈되면서 창작지원이 대폭 축소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2019년도에도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는 것인지, 단순한 회복을 넘어 블랙리스트 이전보다 좀 더 개선된 형태로 나아갈 수는 없는지 매우 답답한 마음입니다. 전체 기금 사업 중 예술창작역량강화사업의 비중이 매우 낮다는 것은 아르코 혁신 TF 보고서에서 이미 충분히 지적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올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넘어가는 듯하여 매우 유감입니다.

사후평가제도에 대해

사실 지원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개혁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평가제도를 논하는 것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지원제도의 틀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그에 따라 각각의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시스템이 면밀히 고안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이 되풀이되고 있는 듯합니다. 물론 혁신TF 보고서에 비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전된 면이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을 예시로 들어 사후평가제도를 논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다년간지원의 경우 점검 사항에서 “현재 예술가의 작업방식과 다년간 지원의 형태가 서로 조응하는지 여부를 살펴야함. 더불어 사후평가 시스템 정비를 전제로 지원제도가 설계되어야 함”이

라고 하셨습니다. 다년간 지원이란 모든 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년간 지원이 필요하고 적합한 분야가 어떤 것인지를 선별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후평가 시스템 정비를 전제로 지원제도가 설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지원제도가 설계된 후, 그 중에서 사후평가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가려내어 각 사업의 특성에 맞는 사후평가 시스템을 고안해야 하는 것이지요.

'신진-중견-원로'와 같은 생애주기에 따라 지원사업을 설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도 회의적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40대에 데뷔해서도 뛰어난 예술적 성취를 보일 수 있고, 40대에 아주 훌륭했던 예술가도 60대에 이르러 별다른 성취를 보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진에 맞는 사후평가제도와 중견에 맞는 사후평가제도는 다르게 설계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다년간 지원도 다르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신진의 경우에는 최초에 기획서 평가만으로 사전지원 할 수 있습니다. 두 해 이상 사후평가가 우수했다면 그 다음 2년 정도 다년간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후평가가 매년 우수한 형태로 나타나고 자주 탁월한 예술적 성취를 보이는 중견예술가라면 어느 시점에서 3년 이상의 다년간 지원으로 밀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만일 3년간의 다년간 지원에서 실적이 지지부진하다면 그 이후에는 3년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다든지 하는 패널티 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원로라 해서 무조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사후평가제도가 잘 자리잡는다면 70대가 되든 80대가 되든 훌륭한 작업에 대해서는 마땅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자연히 왕성한 활동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노년의 예술가들에 대해서는 혁신TF를 통해 다른 방식의 우대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지원금 풀을 설정해두고 공연단체가 60세 이상의 작가나 연출가, 배우를 섭외할 경우 개런티를 그 지원금 풀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연단체로서는 그만큼의 제작비를 절약하는 것이니 지원의 효과가 있습니다. 명망 있는 원로배우를 섭외하고 싶으나 개런티가 비싸서 망설여지는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시지원'에 대해서는 사후평가를 기반으로 "예술적 수월성이 탁월한 예술단체의 경우, 수시지원이 가능하도록"하자고 하셨는데 제가 애초에 생각했던 수시지원은 사후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단체가 어떤 작품을 정말 자신 있게 선보일 수 있을 때 '갑자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즉 지원금 없이 출발했지만 매우 의미있는 작품이 탄생하리라는 확신이 든다면 공연 임박해서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지요. 이 경우 전문평가단이 현장심사를 나가서 정말 예술적 성취가 뛰어나면 지원을 하고, 그렇지 못하면 평가결과를 근거로 남겨서 이후에 사후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수시지원제도에 너무 무분별하게 참여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즉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사전지원도 아니고 사후지원도 아닌, 최초로 도입되는 매우 실험적인 지원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결국 이야기는 원론적으로 돌아갑니다. 근본적인 지원제도의 개선이 선행되고 나서 사업별로 적합한 평가방식, 즉 사전평가, 사후평가, 수시지원 등이 설계되어야 합니다. 심의제도와 평가제도를 정밀하게 구성하는 일, 메타평가를 도입하는 일 등은 그 다음 과제입니다. 근본적인 제도가 바뀌지 않는데 평가시스템의 변화만을 논의하는 오늘의 자리가 공허한 이유입니다.

왜 왜곡된 제도를 바로잡지 않는가

블랙리스트 실행으로 왜곡된 부분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서울연극제를 탄압하기 위해 전국연극제가 어물쩍 확대개편된 대한민국연극제는 내년에도 버젓이 개최될 모양입니다. 더구나 대한민국연극제를 주최하는 한국연극협회가 미정산 문제 등 비리의 온상으로 몰리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연극제는 어떻게 무슨 명분으로 순항할 수 있습니까? 미정산 전력이 심각한 협회에 예술위는 연례행사라고 지원을 계속 합니까?

블랙리스트 실행에 따라 남은 예산으로 '원로연극제'를 신설했고, 예술위가 이를 지속할 명분이 없었는지 '늘푸른 연극제'로 이름을 바꾸면서 역시 어물쩍 한국연극협회로 주최를 넘겨버렸습니다. 원로들을 대접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로라 해서 무조건 지원 받는 방식은 적절치 않습니다.

예술위는 올해 또 어물쩍 'Best & First' 사업을 신설했습니다. 뒤틀린 것도 바로잡지 못하면서 누구의 제안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이런 사업이 새로 만들어졌습니까? 더구나 이 사업에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이 있는 국립극단의 전 예술감독과 사무국장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한 번 만든 사업을 없애기는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대한민국연극제나 원로연극제가 이를 입증하고 있지요. 'Best & First' 사업은 내년에도 지속됩니까?

지원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2019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까? 2020년에는 가능합니까? 블랙리스트 실행에 의해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왜곡되고 변질된 사업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블랙리스트의 상처는 언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회복되기는 할까요?

결론적으로 오늘의 발표 주제에는 "예술위의 지원 체계 개혁"이 별도로 존재했어야 합니다. "사후평가를 통한 문화예술 지원체계 개선"이 아니라 "문화예술 지원체계 개혁에 따른 평가제도 개선(또는 '사후평가 도입')"이어야 했습니다.

지역문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언

황해순 (전 부산문화재단 예술진흥본부장)

1. 지역문화분권 실현은

문화비전2030은 3대가치로서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설정, 8대 정책의제의 주요과제로 지역문화분권 실현"을 제시하여 향후 문화정책을 지역분권과 자치관점에서 접근 할 것을 명시적으로 선언함.

오늘날 문화정책은 문화의 다양성에 기반 한 문화 민주주의로 바뀌고 있다. 이제는 지역의 다양한 문화 활동들이 지역성을 기반으로 펼쳐져야 할 때이며 '예술의 낙수효과'로부터 이제는 '문화의 분수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역의 고유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문화가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문화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 하여야 할 것이다.

2. 위상을 높이면 해결되는가

예술위 국가예술위원회로의 전환이 문체부 관료들의 개입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면 지난 정권 때 중앙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했던가! 세월호와 블랙리스트사건에 공영방송인 KBS(공운법 제외)와 여타매체들은 또한 어떠하였는가! 진실을 외면하고 정론직필의 언론기능을 상실하였으며 정권의 나팔수 역할에 충실하였다.

현재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국가 상위기구로 변경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즉 사람의 문제이며, 제도적 투명성, 자율성, 공정성, 전문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의 문제이다.

3. 예술위 지역사업의 제고

1) 예술위 지역사업은 목적의식부재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의 비체계성
(개별 사업만 있지 연계 협력에 대한 고리 부재)의 구조적인 개선

2) 예술위 직접 공모사업의 과감한 지역 이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직접 공모사업 구조 전반에서 지역에 대한 관점과 이에 따른 사업 재구조화는 불가능한 것인가?
   특히 지난 5년간 직접 공모사업의 심사위원을 분석해보라 서울지역 대비 타 지역 비율, 나아가 서울+경기,인천 대비 타 지역(충청, 호남, 영남, 강원, 제주 권역) 심사위원 비율은 얼마인지, 그리고 선정율은
3) 지역특성화지원과 공연장상주단체사업은 예산분배의 합리성 존재하나 평가시스템의 환류에서 지역 간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

4. 지역문화예술지원 거버넌스 체계구축

지역문화협력 네트워크 구조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해 한지협(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은 그동안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과 공연장상주단체사업의 예산분배의 통보, 정책협의 기능 부재의 오명을 씻고 기구 재구성을 통한 지역문화예술 지원정책 협의기구로의 위상 확보가 절실하다.

1) 예술위와 문체부 예술지원기구(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전통공연예술진흥원, 장애인예술진흥원 이음, 한국문예회관연합회)와 수평적 협업구조 및 중복기능 통폐합

2) 지역간 네트웍의 광역문화재단연합회, 기초문화재단연합회, 한국문화원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문화분권자치의 새로운 협력체계 구축

3) 슬그머니 개명한 지역문화진흥원(1년전 생활문화진흥원)의 위상정립과 역할분담, 협업구조는 아직도 고민할 숙제
   예술위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는 예술정책 및 사업에 대한 숙의기구로 정체성을 재확립 하고,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지원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내 문화예술지원체계는 발전 중이나 여전히 부족한 지역 간 소통, 나아가 국가 전체적으로 예술가들의 소통 기회 확대를 위한 “더불어 함께” 네트워킹 역할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방향 설정

박신의(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1기 한국문화예술위원)

이번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자체 혁신 TF 활동에 따른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은 한편으로 다행이라 여겨지면서도, 과연 TF 의제가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동시에 드는 것도 솔직한 마음이다. 실제로 TF 의제가 보여준 문제의식은 1기 예술위 출범부터 드러났던 것으로 결코 처음의 내용이 아니며, 그래서 이제는 왜 그러한 의제가 관철되기 힘들었는지를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모든 변화는 예술위가 갖는 위상과 역할에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토론문을 작성하고자 한다.

1. 위원회의 정상화 – 민관 협치 기능의 회복?

무엇보다도 블랙리스트 작성은 예술위의 위상과 권위와도 관련된다고 하겠다. 그런 점에서 논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무엇이고, 무엇을 하는 곳이어야 하는지를 새롭게 규정하는 선에서 출발해야할 것 같다. 위원회는 참여정부 시절 예술의 자율성 이념을 근간으로 민관 협치를 이룬 상징적 성과물로서, 우리나라 문화정책에서 기념비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명박정권이 들어서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다시 관리형으로 축소되었고, 그 결과 예술의 자율성 이념과 민간 차원의 전문성 개입이 제한되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위원회로의 전환은 최초의 문화예술 거버넌스의 실현이라 할 수 있으나, 그 상징성이 무색할 정도로 위원회의 존재는 미약하기 그지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때 예술인 블랙리스트를 실행하는 데 위원회 직원들이 나선 상황이니, 위원회의 존재란 거의 잡히지 않는다고 해도 무방할 듯싶다.

그러나 더 불행한 사실은 이러한 민간 협치 불능이 비단 예술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어떤 문화부 산하기관에서도 민간 전문성이 적절하게 발휘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실제로 법인 기관의 이사회라는 존재는 대부분 유명무실한 수준이다. 그것은 법인이라는 조직 형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민간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크게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예술위가 위원의 구성을 다양하게 한다거나, TF 의제로 제시된 것처럼 소위를 활성화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그것과 동시에 예술위가 문화부와 어떻게 관계와 역할 설정을 할 것인가로,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거버넌스가 가능할지로 논의가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2. 과도한 관 주도 문화정책에 따른 민간 영역의 약화

다른 한편 블랙리스트 사태는 그동안 관 주도 중심의 정책 집행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실제로 한국 문화정책의 역사는 짧았으나 시스템을 만드는 데는 어떤 국가보다도 빨랐고, 즉각적이었으며, 일면 효율적 진행을 인정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이렇게 된 데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문화정책 모델을 프랑스로 두었다는 점에서 정부 주도적인 성격이 강했고, 그 효과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일정 정도 짧은 시기에 제도를 갖추고 안정시키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문화정책에서 이러한 관 주도의 정책 드라이브의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실에서 민간 영역의 성장과 비례하지 않게 되면서 오는 불균형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예술 지원이나 다양한 문화기획 사업의 경우 기금 중심의 직접 지원이 워낙 강하다 보니, 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블랙리스트와 같은 사태가 초래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심지어는 최근 몇몇 전문가들이 예술 창작의 수월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술 지원의 무용론을 제기할 정도이다.

반면 문화민주주의 이념으로의 선회에 따른 예술지원의 사업 및 예산 규모는 매우 크게 달라져 왔다. 예술을 통한 도시 재생이나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문화예술교육과 생활문화 사업 등은 문화부만의 사업이 아니라 국토부와 교육부, 여타 부처에서도 진행되면서 엄청나게 증대되었다. 하지만 문화민주주의 이념이야 말로 아래로부터의 문화, 시민의 자발적이고도 자생적인 문화 활동으로부터 기반하는 것임에도, 이 조차 관 주도 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성과와 효과에 집중하게 되는 구조를 배태했다고 본다. 모든 사업들이 전적으로 보조금에 의존하여 진행되다보니, 사업의 지속성을 갖기가 어려웠다는 한계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본다.

3. 문화예술 생태계 논의를 위한 구도

이러한 구도에서 현재 문체부와 예술위의 사업과 예산을 보면, 문제는 더욱 분명해진다. 문체부 예술정책관 일반회계(2018)에 따르면 이미 문화예술교육사업이 전체 예산의 42.5%가 되고, 문화예술진흥기금(2018)의 경우 예술창작지원이 15%인 반면, 소외계층문화역량 강화가 51.8%에 해당한다. 소위 말하는 문화 혹은 예술향유정책 중심의 시대가 된 셈인데, 과연 향유정책 효과에 대해 예술위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묻고 싶다. 실제로 과도한 문화향유정책은 여타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경우인데, 왜 우리는 이처럼 향유정책에 집중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일까.

실제로 향유정책은 창작과 분리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예술위의 경우는 향유가 창작과 분리된 별개의 영역처럼 보인다. 이외에 정부 차원에서의 향유정책(문화가 있는 날, 문화누리카드,

소외계층문화순회, 방방곡곡 문화공감, 생활문화지원)은 대부분 문화복지 차원에 치중된 것으로 보이고, 향유정책이 창작 활성화로 연결되는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결국 예술지원정책이 예술생태계를 살리지 못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원정책에 시스템 사고(System Thinking)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시스템 사고를 예술생태계에 적용한다는 것은 곧, 예술 전체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각각 상호 연결 구조를 갖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연결 구조 속에서 상호작용과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는 일이며, 여러 요소들은 내부적으로 다시 작은 규모의 시스템을 복합적으로 만들어내고, 결국 그것이 전체를 구성하는 톱니바퀴 같은 역할을 담당하면서 통합적으로 운영된다는 원리로 설명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는 실제로 예술생태계가 건강함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목표를 둔다.

따라서 향유정책은 단순히 향유율을 높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향유와 연결된 여러 복합적 구조와 관계를 살피면서 궁극에는 향유 증진이 가져올 다양한 효과, 일테면 삶의 질 향성이거나 행복감 제고, 사회 자본 형성의 차원에 따른 사회적 효과, 그리고 창의성 발견과 예술 옹호자 형성, 혹은 관객 개발 등의 다양한 차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문화와 예술이 그 자체로 선한 것이 아니며, 포용과 배제, 혹은 통합과 갈등 요소가 동시에 실행되는 구조라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문화 다양성 논의가 사회 구조적인 시선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접근되어야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분야 역시, 생태적 구조를 갖는다는 관점에서 민간 영역의 다양한 주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지역문화진흥법 상에 명시된 문화마을·문화도시 사업 역시 더 이상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예술가, 문화노동자 등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인 요구와 활동을 기반으로 하되, 사업의 자연스러운 확장 선에서 공공의 협조가 주어지는 형태로 조정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결국 정부의 역할이 어떻게 주어질지, 정부의 개입은 어느 선에서 얼마만큼 돼야할지를 고민하자는 것이다.

4.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의 대응과 예술 혁신

다른 한편 예술위의 창작 지원 사업이 중요한 만큼, 예술위 스스로가 예술 혁신을 위한 노력이 겸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학예술교육이나 주류 예술계에서 논의되는 예술은 모더니즘 시대의 장르 예술에 국한되어 있다. 어쩌면 이러한 예술 유형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관람객 개발이 어렵고, 시장 형성이 어려울지도 모른다. 모더니즘적 개념의 장르 예술은 소위 말하는 엘리트 예술로서 전통적인 유통과정(극장, 콘서트홀, 미술관 등)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고, 그러나 사회문화 환경은 나날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문화민주주의로 퍼블릭 아트나 커뮤니티 아트, 도시 재생에 대한 예술 개입 등과 같은 사업이 팽창하면서 예술가들은 전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보조금 사업을 실행하면서 대학에서 배우지 못한 예술과 사회를 결합하는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소셜 아트(social arts)를 비롯하여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예술에 대한 담론이나 논의, 연구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보조금 사업은 확장하면서 예술가라는 정체성이 묘하게 흔들리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형국이다. 그 가운데 예술 강사나 문화예술교육사라는 이상한 직업 혹은 일자리, 혹은 티칭 아티스트 등이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이유도 이런 배경에 있다고 하겠다.

동시에 '예술의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 of the arts)이나 문화 다양성 구도 속에서 장애예술을 본격적인 예술로서 논의를 주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예술위의 문화다양성 사업은 다문화 사회 맥락에 한정되어 있다는 생각이고, 지극히 탈정치적이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예술과 테크놀로지의 관계, 예술가들의 새로운 면모, 예술기업가정신의 논의 등도 여전히 주어진 과제인데, 궁극적으로 예술위가 이러한 예술 담론을 주도하면서 예술정책 자체를 훨씬 전문적으로 펼쳐가는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바로 이 점에 예술위의 핵심적인 역할이 있다고 하겠고, 바로 이러한 역량을 보유할 때 민관 협치도 가능한 것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참고문헌〉

박신의 외(2018),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기초연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박신의(2017), 새 정부의 문화정책, 가장 어려운 숙제? 그러나 제대로 풀어야 할 매듭, 『국회입법조사처보』, 2017 여름호, pp.19-23

박신의(2016), 생태계 구도에서 바라본 예술지원정책 - 건강한 예술생태계는 어떻게 가능한가?,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허은영(2018), 〈예술향유정책 현황 및 개발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상 재정립을 위한 몇 가지 단상

김정수(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1. “문화예술”위원회 vs. “예술”위원회

○ ‘문화’는 ‘예술’이라는 core에서 파생되는 부산물
○ 명칭 변경은 위원회의 본질을 명확하게 규정짓기 위해 필요한 선결 과제
○ 위원회의 본질적 사명은 문화의 essence인 ‘예술’에 집중하는 것임을 천명
○ 예술이라는 핵심 이외의 부수적 사업은 지역문화재단 등으로 이관

2. 예술 “창작” vs. 예술 “향유”

○ 예술과 문화의 시발점은 ‘창작’
○ 예술위는 예술의 ‘창작’ 활동 지원에 집중해야
○ 예술위는 예술을 향유하는 관객 보다는 창작하는 예술인에 집중해야

3. 예술인에 “의한” 위원회 vs. 예술인을 “위한” 위원회

○ 예술위의 핵심 업무는 예술인에 대한 지원행정
○ 예술작업과 예술행정업무는 본질적으로 상이한 활동
○ 예술의 전문가가 반드시 예술행정의 전문가인 것은 아님
○ 예술인은 예술활동에, 예술행정가는 행정업무에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
○ 예술인이 예술행정가로 전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예술인을 예술행정 전문가로 교육시키기 보다는 행정인을 예술행정 전문가로 양성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임

4. “예술인”을 위한 위원회 vs. “예술”을 위한 위원회

○ 비유컨대 예술위는 ‘예술’이라는 신(神)을 섬기는 기관
○ 또한 예술인은 예술이라는 신의 은총을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전파하는 전도자
○ 예술인에 대한 지원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술의 부흥이라는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
○ 예술행정가로 전업한 예술인은 자신의 ‘출신’(특정 예술 장르)은 잊어버리고 전체 예술 관점에서 바라보는 마인드로 전환할 필요

5. “예술”을 위한 위원회 vs. “공익”을 위한 위원회

○ 예술위의 자금 출처는 국민들의 지갑
○ 공금을 사용하는 모든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익
○ 예술위가 추구하는 예술 부흥은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공익 혹은 국민의 행복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

6. 자율성 vs. 책무성

○ 예술의 부흥을 위해서 예술위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지원행정의 자율성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함
○ 그러나 예술위의 독립성 · 자율성은 예술 부흥을 통해 국민 전체의 공익이 증진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만 인정될 수 있음
○ 막대한 공금의 사용에는 그에 상응하는 막중한 공적 책무성이 따라야 함
○ '예산=권한=책임'의 등가원칙에 따라 예산이 많아지면 그에 비례하여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아울러 책임의 범위와 수준도 높아져야 함
○ 공적 책무의 이행 정도에 대한 판정은 input에 해당되는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그로 인해 얻어지는 output에 해당되는 '예술 부흥'과 '공익'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함

7. 팔길이 원칙의 다면성

○ 일반적으로 팔길이 원칙은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예술행정으로 이해됨
○ 예술위 차원에서 팔길이 원칙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측면으로 확대 적용되어야 함

1) 예술위-정부 관계
- 정부(문화부)는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큰 틀과 기본 방향을 결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예술위는 이를 수용해야 할 책무가 있음
- 블랙리스트 파문에서 보듯이 예술위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간섭은 '예술' 보다는 '정치'를 위한 행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 예술인 지원행정에 관한 제반 의사결정은 정부의 간섭 없이 예술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함

2) 예술위-예술계 관계
- 예술위는 '예술인' 자체가 아니라 '예술'과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임
- 예술위의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하려면 정부 뿐 아니라 예술계로부터도 일정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함
- 정부의 부당한 간섭이 배제된다고 해도 예술위가 예술계(특정 인물, 단체, 장르, 파벌 등)에 포획(capture)된다면 '예술' 보다는 '예술인'을 위한 행정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음

3) 예술위-일반시민 관계
- 예술위는 공익 목적으로 공금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임
- 예술행정의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서는 소수 예술인들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는 것이 필요함
- 지금까지 예술위와 일반시민의 관계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팔길이' 만큼 좀 더 가까워질 필요가 있음

4) 예술위 조직내부 관계

- 예술위 조직의 최고의사결정기구는 대개 '예술행정'의 전문가 보다는 '예술' 혹은 '문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것이 현실임
- 예술위 행정의 큰 틀과 기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이들의 권한임
- 예술행정 전문가로서 예술위 직원들의 자율성 또한 인정될 필요가 있음
- 예술위가 대외적으로 정부 및 예술계로부터 팔길이 만큼의 거리를 유지하며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술위 직원들 역시 예술위원장 · 위원으로부터 일정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임

8. 제도 vs. 사람

○ 블랙리스트 파문과 같은 불행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제시되는 각종 다양한 방안들은 대개 '제도의 개선' 측면에 집중되어 있음

○ 하지만 현재의 제도, 조직, 법령 등을 바꾸는 일은 수많은 견해 차이 및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매우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며, 각종 경제적 · 사회적 비용 역시 만만치 않을 것임

○ 설령 어떤 식으로든 '개선방안'이 실현된다고 해도 '개선'이라는 명칭이 곧 실질적인 '진짜 개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최악의 경우 허울뿐인 '자기최면'에 불과할 수도 있음

○ 결국 '제도' 보다는 그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이 더 중요한 질문의 대상일 수 있음

○ 올바른 예술행정을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분'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민주적인 열린 토의와 상호 비판을 통해 최소한 '보통 사람'이 '나쁜 놈'으로 전락하지는 않도록 막는 것이 차선책일 수 있음